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일시 2023년 11월 15일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사회 | 최정학(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발제 |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의 문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실태에 대한 평가
권영국 변호사 (중대재해 전문가 넷)

토론 | 50인(억)미만 사업장 노동조합
건설노조 충남건설지부장 하동현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명로
50인미만 제조업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장 정현철
안전보건 전문가
울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이명구 교수



주최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을지기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 박주민), 강은미, 강성희,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용혜인, 장혜영

토론회 및 자료집 순서

발제 및 토론자	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소개 및 인사 	P.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발제 1]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점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P.17
[발제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실태에 대한 평가 - 권영국 변호사, 중대재해전문가넷	P.38
[토론 ①] 50억 미만 건설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의 문제점 - 하동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남건설지부장	P.67
[토론 ②] 50인 미만 제조업: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 정현철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장	P.69
[토론 ③]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P.76
[토론 ④] 중소기업중앙회 -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P.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응답 및 플로어 토론 	

◆ 인사말

윤 택 근 ||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모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전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 사망, 일본 핵 오염수 투기 방치까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쳐 온 윤석열 정권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을 연기하는 원 포인트 법안 발의와 정치적 거래>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적용유예 연장이 민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차별을 어찌 민생이라고 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범죄행위다” 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제정 당시 국민 72%의 찬성으로 제정되었고, 지금도 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노동자 시민의 여론이 80% 이상으로 훨씬 더 높습니다. 법 제정 이후 더디지만 기업들이 안전투자, 안전인력 증원,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등 현장의 변화가 쌓여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법 제정에 찬성이 80%가 넘었고, 중기중앙회의 조사로도 내년에 법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응답이 60%로, 이는 법 시행 초기 50인 이상 사업장 준비율보다 높습니다.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연기한다면 대기업에 대한 노동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직장기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 통째로 사문화 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에도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청에게만 책임을 전가해 왔던 대기업 원청의 안전에 대한 책임도, 법 적용을 준비해 왔던 60%의 중소기업의 변화와 노력,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과 예산 지원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일터를 이제는 멈추자 라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시행 2년이 다 되어가지만 30건도 안 되는 기소와 10건도 안 되는 재판으로 법 시행의 효과는 매우 낮습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엄숙한 사회적 명령을 거부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주신 생명안전행동,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와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신 중기 중앙회, 안전보건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당사자로서 50인 제조업, 50억 건설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실 동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노총은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 라는 기조로 수년동안 싸워 왔습니다. 법 제정에도, 법의 엄정한 집행에도 노동자 시민이 함께 싸워 나갔던 것처럼, 계약을 저지하고, 법을 강화하는 투쟁에도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 인사말

김 미 숙 ||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대표



어느덧 아들 용균이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지 만5년이 되었습니다. 저의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을 잃고 가슴 속 텅 빈 자리의 상실감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겨우 24살밖에 못 살도록 지켜내지 못한 부모는 산다는 것 자체가 힘이 들고 버겁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삶에 의미를 찾는다면 더 이상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없기를 처절한 마음 담아 행동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사고 당시 용균이 법이라고 산안법이 개정되었지만 용균이를 구하지 못하는 기만적인 법이었기에 또 다시 나서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영국에 살인기업법처럼 강력한 기업처벌법 만들기 위해 유족과 시민 사회단체가 절박한 마음으로 30일 단식까지 감행하며 버틴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꿈만 같습니다.

원안보다 한참 후퇴된 중처법이 시행된지 2년이 다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산재사망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 정권과 경총이 반노동 친기업 정책으로 중처법을 완화 시키려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80%나 발생하는 심각한 수준임으로 유예시켜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시민 대다수가 노동자임으로 죽지 않고 일하고픈 당연한 열망은 가장 절박한 권리임으로 그 누구도 꺾을 수도, 꺾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서대문역 디엘본사앞에서 유족이 사건 해결을 위해 천막농성을 치고 조석으로 1인시위를 진행한지 벌써 석 달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8월 이편한세상 아파트를 짓는 디엘이엔씨에서 법 시행되고 1년 8개월 안에 7번의 사망사건에 8명의 노동자가 죽었지만 단 한 번도 기소되지 않은 해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도 기업이 약삭빠르게 유족과 합의 중용하면서 모두 처벌불원서에 싸인을 강요받은 결과가 아닐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디엘이엔씨는 마땅히 연쇄 살인한 만큼 무거운 형량으로 가중처벌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괴한 일은 필시 디엘이엔씨에만 국한된 게 아닐 겁니다. 이렇듯 법이 있으되 제대로 집행이 안 되다 보니 산재사망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 이유라는 생각에 분통이 터집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만들고 함께 힘을 보태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안전에 대한 좋은 시너지 역할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국가가 안전만큼은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도록 다져서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피맺힌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며 기업과 정부가 경각심을 높이는 발판이 되길 기대합니다.

◆ 인사말

박 석 운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작년(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첫해인 작년 한 해 동안 산재 직업병 사례가 감소하기는커녕 도리어 증가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2022년 산재사고 재해자 숫자는 107,214명으로 전년(법시행 이전) 대비 4.8%나 증가하였고, 산재사고 사망자 숫자도 874명으로 전년 대비 5.6%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노동건강연대 통계에 의하면, 올해(2023년) 1~9월의 산재사고 사망자 숫자는 652명으로 전년 대비 18명(2.8%)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에도 산재직업병 참사는 끊이지 않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기와 장소, 그리고 그 구체적 상황만 조금씩 달리해 가며 비슷한 유형의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청년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또 다른 김용균들이 전국 각지에서 계속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위협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산재왕국” 한국의 산재사망율은 OECD 평균의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더라도 2022년 산재사고로 사망한 874명의 재해자 유형을 정리해 보면, ‘떨어짐’, ‘부딪힘’, ‘끼임’, ‘물체에 맞음’, ‘깔림뒤집힘’, ‘무너짐’ 유형을 모두 합치면 총 656명(322명+92명+90명+57명+53명+42명)이나 되어서 전체 산재사고 사망재해자의 75.05%가 구시대형 재해 유형인 반복성 재해에 해당됩니다.

중대재해의 절대다수를 점하는 이러한 반복성 재해들을 예방하는 데는 높은 수준의 과학적 안전시설이나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반드시 안전시설을 구비하는 등 제반 안전조치가 취해진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산재예방 기본원칙대로 작업이 진행된다면, 상당수의 중대재해들이 예방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산재 사망 등 중대재해 참사가 계속 되는 것은, “서푼어치도 안 되는 벌금이나 보상금을 물어주는 것이 안전조치 제대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싸게 먹힌다”라는 잘못된 자본주의 법칙 때문에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구조적 원인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런 뒤집힌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업이 적극적 산재예방책을 실행하는 것이 도리어 기업의 이윤이나 기업경영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들도록,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엄하게 처벌당

하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기필코 당하고야 만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애를 써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까지 실현시켰지만, 정작 실정법 적용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입법취지에 맞게 똑바로 적용하지 않고, 종전처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산재·직업병 참사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집권여당과 정부당국은 재계와 조중동 족벌언론과 연계하여, 내년(2024년)부터 법 적용이 시행될 5~49인 사업장에 대해 추가로 적용 연기를 추진하고 있는 통탄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산재직업병 예방대책을 실시하여 산재직업병을 대폭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도리어 이에 역행하는 정책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정책방향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통계만 보더라도, 소규모 사업장인 5~49인 사업장에서의 재해 발생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2022년에 5~49인 규모 사업장에서 산재사고를 당한 재해자 숫자는 45,231명으로 전체 산재사고의 42.2%에 달했고, 산재사고 사망자 숫자도 365명(41.8%)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5~49인의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산재직업병 근절을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추가로 유예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제대로 법적용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이번에는말로 산재직업병 재해의 압도적 다수 사례를 발생시키는 소규모 사업장 산재직업병을 근절시키는 획기적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소규모 사업장이 여건상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를 제대로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당국이 나서서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를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야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제는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상 미진한 부분(5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인과관계 입증책임전환 등)을 개정하는 노력과 함께, 중대재해에 대한 노동부,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의 법집행 실태를 밀착 감시하는 사회적 감시체계를 실효성 있게 구성·운영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 인사말

박 주 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갑니다. 많은 부족함을 안고 출발한 법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안전은 권리’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시작되었고, 정부와 기업이 모두 나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절차와 제도들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발생

하고,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더딘 수사와 재판, 그리고 솜방망이 판결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상시근로자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당초 내년 1월 27일에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중점 추진법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꼽기도 한 만큼, 이에 대한 진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대재해 사망사고 80%가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 기업이 행해야 하는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교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의 기본적인 조치가 50인(억) 미만 사업장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 적용유예는 오히려 중대재해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미루는 것만이 답이 될 순 없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상관 없이 모든 노동자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전문인력 확보, 안전교육과 보호장비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을 나누고, 중대 재해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에 대해 의미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고, 노동자, 시민의 안전한 권리를 보장해나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을지로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말

강 은 미 || 정의당 국회의원



2023년 11월 9일, ‘노란봉투법’이라 명명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하청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발 내딛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의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규정된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는 나라입니까?

혹시, 비정규직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는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노동권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받지 못하고, 하청업체 노동자라는 이유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빵을 훔친 절도범은 그 사람이 아무리 가난해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데, 노동자의 권리는 사업자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헌법적 권리가 하위법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작업현장을 개선하지 않는 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장은 영세기업이라는 이유로 면책되는 현실이 대한민국입니다.

옛날 신분과 계급이 분명했던 시절에, 종살이를 하는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겨 주인이 머슴을 죽여도 그 죄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분제가 철폐되고 헌법으로 계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크더라도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하다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을 방치하고, 일하다 죽는 것이 조심하지 않는 노동자의 탓이라고 말하는 사장은 사라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 잔인한 기업살인 국가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동자가 단결하고, 국민이 힘을 모읍시다.

만일 그 어떤 정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말하고 기업살인을 용인한다면, 우리의 단결된 힘으로 그 정당을 부수고 노동자 정당으로 뭉쳐 국회를 점령합시다.

대한민국이 헌법이 살아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면, 일하는 사람이 죽는 일터를 만드는 사장은 제아무리 영세해도 처벌받는 것이 당연한 나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인사말

강 성 희 || 진보당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진보당 강성희입니다.

지난 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유예기간을 걸쳐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과 유가족의 피눈물을 딛고,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여전히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작년에 256명, 올해 9월 기준으로 192명이 숨졌지만, 검찰 기소는 단 25건, 판결은 고작 7건입니다. 기소 대상은 중소기업에 집중됐고, 대기업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당과 경영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법안을 발의하는 등, 계속해서 적용유예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 대다수의 공감대에 거스르는 행보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80%가 발생하지만 대책없이 방치되어 왔습니다. 법 적용의 연기는 시기만 2년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완전 무력화되는 길입니다.

일하다 죽어도 되는 노동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반드시 예정대로 50인(억)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는 법 적용을 전면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엄정하게 처벌 될 때까지 진보당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말

류 호 정 || 정의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오늘도 2명이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2천 명이 죽는 산재 공화국 대한민국입니다. 중대재해 사고의 책임에 대해 기존 형법과 산안법의 공백과 한계를 메워 중대 사망사고를 줄이자고 ‘기업’ 두 글자를 빼는 우여곡절 끝에 ‘중대



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내년부터 5인 이상 50인(50억)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지만 유예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횡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소규모 사업장에 내년 법 적용이 우려된다며 일부 재계 주장을 전하며 이것을 ‘민생’이라며 거들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년 유예 법안을 지난 9월에 발의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대 적용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재계와 함께 끊임없이 법이 모호하다며 앞장서서 법을 흔들며 왔습니다. 그나마 최근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기소 사건인 두성산업 위헌법률심판 재청 신청 사건에서 명확성·과잉금지·평등권 위반이라는 사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에 맞게 소모적인 위헌시비는 이제 중단하고 어떻게 하면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정착시킬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검찰은 기소는 잘 하지 않고, 구형도 밑바닥 수준입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주로 반복해 ‘숨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정부와 재계는 산재 예방에 무슨 엄청난 기술과 비용이 필요하고, 법 해석이 복잡하다며 호도하기 바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산재 사망 발생 사업장을 보면 사업주가 기본적인 산재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의지와 관심도 없으며 노동안전보건은 비용으로만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더라도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사업주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부족한 점 있다면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매장문화재 발굴 현장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문화재청이 특단의 조치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발굴 현장에서 9건의 중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숫

자는 9명이고, 부상자는 11명입니다. 이 중 3건은 ‘산업재해 조사표’도 제출하지 않았고, 7건은 ‘안전 관리비’ 내역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도 안 지키고 안전보건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청 연구보고서는 대부분의 발굴 조사 현장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실시 의무에 대하여 인지를 못 하는 현상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모두가 무엇 때문에 사망사고가 일어나는지 알고 있지만 기본 중의 기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이유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미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법을 유예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토론회에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님과 권영국 중대재해 전문가 넷 변호사님이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동현 민주노총 충남건설지부 조합원님, 정현철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장님, 이명구 을지대학교 교수님, 중소기업중앙회와 고용노동부, 법무부 관계자분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논의를 풍부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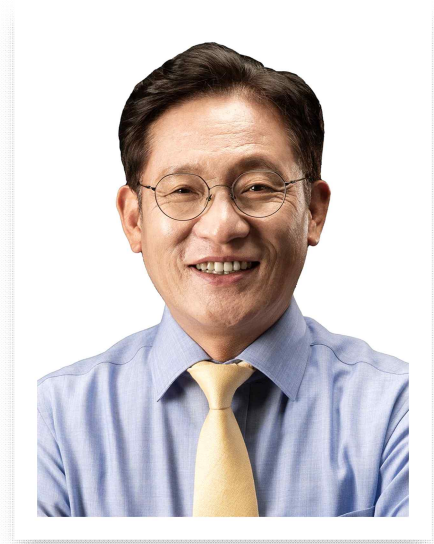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중요하다는 것에 모두 동의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녀올게’라는 말이 마지막 말이 되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원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말

배진교 || 정의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중대한 시기에 준비된 이 토론회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준비에 힘써주신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생명안전행동,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함께 주최해 주신 각 의원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수사 방해와 봐주기, 누락 기소,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인해 법의 효과가 크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법의 개정 방향은 이러한 부족 점을 개선하고, 미진한 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일터의 안전 경각심을 높이는 데에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당의 주장대로 이제 와서 적용을 유예한다면, 그동안 성실하게 준비했던 회사는 바보가 되고, 준비를 안 한 회사가 이득을 보게 되는 셈이고, 이는 법을 사문화시키는 길입니다. 상식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매년 강조하는 것이 ‘준법’입니다. 처벌을 피하는 방법은 법을 무력화시키는 길에 있지 않고, 법을 준수하는 길에 있다는 점을 정부와 여당이 명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중재법의 안전조치는 중재법이 아니라도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대통령의 ‘준법’이 노동자만이 아닌, 경영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의 일터에서 매년 2,400명이 산재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연말, 국회 본관 앞에서 처절하게 벌어진 한 달간의 단식천막농성은 그 현실의 끔찍함을 대변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밟 디디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지, 분명히 짚고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논의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토론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왜곡된 비방을 차단하고, 그 한계와 부족함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인사말

심 상 정 || 정의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협오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 이름을 빌려 자영업자들의 국제노동기구(ILO) 탈퇴 호소,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우려 등을 언급한 것입니다. 무려 고위공직자에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강조한 대목 중 하나라는 점에서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드립니다. 살아있는 민생의 목소리 운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ILO 탈퇴 언급은 대한민국을 국제적 노동악당국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중대재해법 유예는 죽음으로 남긴 노동자들의 마지막 염원을 틀어막겠다는 것입니다. 정녕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경영계의 곡소리는 들려도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의 비명은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다 떨어져서, 끼여서, 깔려서, 치여서, 타들어 가서 등 열거할 수 없는 이유로 비참한 죽음을 맞았던 노동자들의 피로 쓰인 법입니다. 유가족들의 눈물과 한으로 흑한의 농성 끝에 만든 법입니다. 그마저도 양당의 칼질로 반토막 난 미완의 법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보완이 시급한 법입니다.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최근 10년간 전체 산재 사망자수 가운데 50인 미만의 비중이 무려 60.7%에 달합니다. 오히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작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를 늘려 작업장 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소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명피해는 작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어디서든 발생합니다.

지난 8월 말까지 노동부가 중처법 위반으로 수사한 사건 408건 중 검찰 이첩이 83건, 기소 25건, 재판 결과가 나온 8건 중 실형은 고작 징역 1년 딱 1건이었습니다. 0.24%입니다. 수사는 늦고, 기소는 적고, 재판은 길며, 처벌은 솜방망이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일하다 죽는 나라에서는 저출생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소멸을 막기 위해선 처벌은 어렵고 사망은 쉬운 이 구조를 깨뜨려야 합니다. 작업장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노동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하는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이자, 경제 논리를 넘어서는 공동체 수호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토론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조목조목 지적해주는 문제의식은 우리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와 공동체를 수호하기 위한 논리의 무기를 잘 갈고 닦아, 저와 정의당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협오와 거대한 퇴행에 맞서 최일선에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말

이 은 주 || 정의당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내년 1월부터 50(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과 사용자단체는 적용유예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라는 이유로 법 시행을 유예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 노동자는 7,138명으로, 사망사고의 76%가 이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해 평균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 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 어찌 이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가 말하는 민생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중대재해법은 물론 많이 부족한 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됐고, 사업주들은 안전보건 법령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되는 경영책임자를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해 처벌을 피할 방법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법이 무용하다거나 재해예방이 도움이 안 된다고 비관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불과 수년 전 만해도 수 백만원 벌금으로 끝나면 그만이었던 사망재해에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은 분명 중대재해법 때문입니다. 기업들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여부를 그나마 스스로 점검하게 된 것 또한 이 법의 효과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문제가 된 적용 실태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이 법이 현장에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켜낸 실질적 규범으로 자리 잡게 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님, 민주노총의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님과 중대재해 전문가들의 권영국 변호사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토론에 참여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여기 모이신 분들의 지혜를 모아, 앞으로 중대재해법이 제대로 자리잡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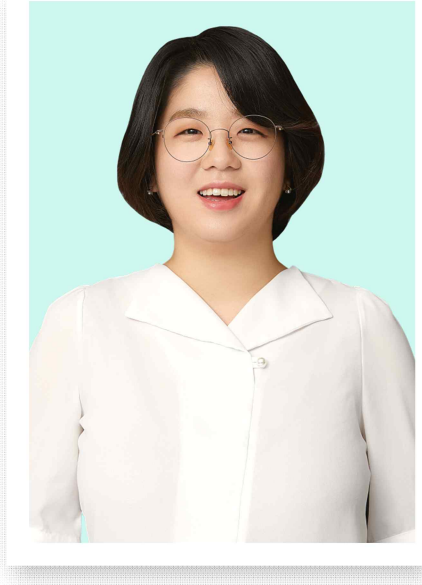
◆ 인사말

용 혜 인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목숨마저 차별받아야 하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한 맺힌 목소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법의 사각지대와 노동부의 불기소 남발로 인해 노동자 시민들이 겪는 중대재해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50인(억) 사업장 적용유예 조항이 하루라도 빨리 폐기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가 개선되도록 국회가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당은 '50인(억) 사업장 적용유예 기간 연장하겠다'며, 중대재해 처벌법의 퇴행을 예고했습니다. 기업들이 면피할 시간을 벌어주고, 연장된 기간동안 처벌형량을 감형하는 등 취지를 훼손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려는 겁니다. 후보시절부터 '기업인의 경영의지를 위축시킨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를 왜곡해온 윤(尹)심에 꼭 맞는 행보입니다.

최근 3년 간 산재사고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의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라, 예방과 교육, 재발방지대책 수립까지 총망라하는 법률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미루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의무 전반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아닌 전진이 필요합니다. 정부여당의 거대한 퇴행에 맞서, 야당이 분명한 입장을 표해야 합니다. 일터에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의 지워진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쇠물 쓰지 말라'고 함께 노래하며,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곁에 섰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명심해야 합니다. '위험성을 몰랐으니 책임도 없다'는 경영책임자의 뻔뻔한 해명이 유가족들을 얼마나 큰 고통에 몰아넣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열리는 국회 토론회가 중대재해 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을 저지하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제 정당, 선배동료 의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기본소득당 역시 누구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인사말

장 혜 영 || 정의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인사 드립니다.

'다녀올게'가 누군가의 마지막 인사로 기억되어선 안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했고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여러 사람들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는 뒤늦게나마 부족한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렵사리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규모로는 세계 10위권을 자랑하는 한국 경제의 뒷그늘엔 매일 6~7명이 일터에서 사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서려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들어야 할 당연한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이전부터 위 법에 대한 악의적인 평가를 꾸준히 이어왔으며 심지어 개악에 해당할 정도의 상당한 수정을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위 법을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폄하한 현 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을 앞두고 이에 대한 유예 연장을 요구하며 관련 일부개정안 또한 발의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3년 사이 산재 사망 사례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는 법안의 본래 취지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더구나 최근 여러 노동현장에서 허위로 사업장을 분리하거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계약하며,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 관련 사례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유예를 연장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노조, 학계, 정치권, 정부, 중소기업 등이 서로 모여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논의하는 오늘 토론회와 같은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 취지에 맞도록 정착하고 우리 사회 모든 일터의 안전을 한층 강화해나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저와 정의당 또한 오늘 논의를 경청하여 안전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1]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1. 들어가며

경제규모에서는 세계 10위권인 한국에서 매년 2,400명 산재 사망이 발생하는 참혹한 일터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동,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제정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임. 15년간의 입법 운동으로 제정된 법은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범죄행위” 임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임. 국민의 71%의 찬성 (2020년 KBS 신년 여론조사)으로 제정된 법이며, 2023년 한국 비정규 센터 조사에서도 ‘법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가 82.2%에 달하고 있음. 2022년 갤럽 조사에서는 중소기업의 80%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찬성.

그러나, 경영계는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법을 폄하하고 개악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재부를 앞세운 ‘법을 뛰어넘는 시행령 개악, 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TF 발족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가 추진되고 있음. SPL 파riba게뜨 노동자, 대전 아울렛 화재 참사. DL 이앤시 등 반복적인 중대재해에 대한 분노와, 노동 시민사회의 법 개악에 대한 강력한 반대가 지속되자 급기야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원 포인트 법안 개악을 추진하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킬러 규제> <민생경제> 운운하며 법 개악을 선도하고 있음.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당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5인 미만 적용 제외에 대해 ‘5인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감소되지 않으면 5인 미만 적용제외 조항 삭제에 대해 정부도 찬성해야 한다’ 는 국회의 질의에 노동부도 중소기업부도 동의한 바 있음.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5인미만 적용제외 삭제는 커녕, 산자부, 중기부는 50인 미만 적용유예도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노동부조차 적용유예 연장을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음.

지난 11월 3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소 1호 사업장인 두성산업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되었음.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두성산업이 제기한 명확성의 원

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위헌 제청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함.)¹⁾

위헌 주장부터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주장까지 경영계와 보수 언론 및 보수 전문가의 주장은 편향적인 실태조사, 왜곡과 정치 과잉으로 점철되어 있음. 이제 법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중단하고, 수사, 기소, 처벌 등 법의 엄정한 집행과 법의 현장 안착을 통한 재해 감축을 위해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함.

2. 50인(억) 미만 사업장 지난 10년간 산재 사망 1만2천45명

○ 최근 3년 사고 사망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 노동부가 산재 통계 기준을 여러 개 만들면서 혼선을 주고 있음. 최근 노동부는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 통계> 라는 기준을 만들어,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 사망이 60%라고 밝힘. 그러나, 이는 노동부 감독관이 <재해조사 대상>이라는 판단이 개입된 통계이고, 자의적 판단으로 인하여 실질과 다를 수 있음.
- 산업안전공단이 매년 발간하는 산업재해 현황 분석²⁾에서 집계된 산재 사망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 노동자는 12,045명에 달하고, 이중 사고사망은 7,138명에 달함. 전체 노동자 기준에서는 사고 사망이 전체 산재 사망의 47%이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59%에 달함. 보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직업병 산재사망이 승인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중대재해 처벌법은 산재 사망 전체가 적용 대상이나, 노동부의 재해 조사 대상은 사고 사망으로 되어 있음. 사고 사망으로 한정해도 지난 10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 노동자는 7,138명으로, 사고 사망 전체 노동자의 76%에 달함.
- 최근 3년간 (2020년~2022년) 사고 사망은 전체 사고 사망의 80%에 달함.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음.

1) 2023. 11. 03 창원지방법원 보도자료 :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고 중대한 산업재해가 야기된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방법내지 수단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 등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022 초기1795 기각 결정)

2) 노동부는 2012년 통계 기준을 변경했고,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는 변경 전 기준으로 산출되는 산재사망 통계가 있음. 이에 따르면 매년 평균 2,400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동 분석자료에는 사고 사망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준 변경 전 통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음. 이에 2012년 변경된 통계 기준에 따른 산재사망과 사고사망 통계를 기준으로 통합 구성함.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년도별 산업재해 현황/ 분석 통합 재구성]

년도	사업장	노동자	산재 사망	50인 미만	사고 사망 전체	50인 미만
2022	2,976,026	20,173,615	2,233	1,372	874	707
2021	2,876,635	19,378,565	2,080	1,359	828	670
2020	2,719,308	18,974,513	2,062	1,303	882	714
2019	2,680,874	18,725,160	2,020	1,245	855	660
2018	2,654,107	19,073,438	2,142	1,285	971	745
2017	2,507,364	18,560,142	1,957	1,148	964	736
2016	2,457,225	18,431,716	1,777	1,077	969	705
2015	2,367,186	17,968,931	1,810	1,062	955	702
2014	2,187,391	17,062,308	1,850	1,078	992	717
2013	1,977,057	15,449,228	1,929	1,116	1,090	782
총계			19,860	12,045	9,380	7,138

[최근 3년간 산재 사망 통계 / 산업안전공단 산업재해 현황 분석]

년도	산재사망	50인 미만	사고사망 전체	50인 미만
2022	2,233	1,372	874	707
2021	2,080	1,359	828	670
2020	2,062	1,303	882	714
총계	6,375	4,034	2,584	2,091
비율		63%		80%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해인 2021년은 전년 대비 전체 노동자나,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사고 사망 이 감소함.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법 개악이 추진된 2022년은 전체 노동자나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사고 사망이 증가함. 이를 50인(억)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은 늘고,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장은 줄었다고 즉자적인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임.

3.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연기는 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정책 전체를 포기하는 것

○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징벌적 손해 배상

제4조 안전보건 확보의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 목표, 경영방침 설정 2. 전담 조직을 둘 것 (50인/억 미만 해당 없음) 3. 유해위험 요인 확인 개선 업무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할 것 4.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 (재해예방 위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 유해 위험 요인 개선) 5.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권한과 예산 줄 것,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평가 기준 마련,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부분 적용) 6. 산안법 이상의 안전보건 관리자, 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활동시간 보장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담당자만 해당 됨) 7. 종사자 의견 듣는 절차 마련 8. 중대재해 대응 메뉴얼 마련, 반기 1회 점검 (작업중지등 대응조치, 구호 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9. 도급 용역, 위탁 시 기준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단독 기업일 경우 적용 안 됨. 하도급인 경우가 많음)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반기 1회 이상 점검, 2. 의무 이행되지 않은 사실 확인되면 인력이나 예산 추가 편성, 집행 등 의무이행 필요한 조치 할 것 3.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4. 미 실시 교육에 대해서 이행의 지시, 예산 확보 등 교육 실시 필요한 조치 할 것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 무		
제15조 징벌적 손해배상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의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명령 이행> <안전보건 점검과 교육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조치> 임.
- 경영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어려움을 들어 적용 연기를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50인(역) 미만 사업장은 <전담 조직>은 적용대상이 아니고,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활동시간 보장의 경우도 제조업등 일부 업종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만 적용됨. 도급, 용역시의 기준 마련도 하도급이나 용역 위탁을 주는 경우에만 해당되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음.
- 그 외 규정은 노동부나 각종 단체에서 매뉴얼이나 표준안이 마련 배포되어 있는 상태여서,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보완하여 마련하도록 되어 있음. 상대적으로 공정이나 조직이 복잡하지 않은 50인(역) 미만 사업장에서 3년이 되도록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 준비하지 않은 것이라면 적용유예의 연기의 실효성은 없을 것임.
- 노동부는 안전 컨설팅 사업 실시율을 제기하고 있으나, 컨설팅 실시가 체계 구축으로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고, 50억 미만 건설현장은 공사기간도 짧고, 수개월마다 새로이 생기는 현장이고, 제조업의 경우도 매년 신설 사업장이 발생하고 있어, 컨설팅 사업의 완료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정부 시정조치 이행, 안전점검, 안전교육에 대한 경영책임자 의무 전체를 적용 유예 하는 것

- 중대재해 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의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만이 아니라, 재해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기본적인 조치에 대해 규정함. 적용유예 연장은 ‘50인(역) 미만 사업장에 6개월에 1회 안전점검, 6개월에 1회 안전교육 실시 점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같은 기본 조치도 적용을 연기하는 것임.
- 정부, 지자체에서 점검 결과 내린 시정명령 이행조차도 적용 연기되는 것으로, 50인(역) 미만 사업장의 법 위반이 그대로 방치되는 현실을 다시 또 반복하는 것임.

○ 제2의 메탄을 실명 청년 노동자, 화재 참사 9명 세일전자

- 2016년 인천 부천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메탄을 중독으로 7명의 청년 노동자 실명. 2016년 1월 발생

확인 이후 노동부에서 메탄올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장 점검 진행. 한 달 뒤 인천의 한 사업장에 노동부 감독관 점검 시 메탄올 사용하지 않는다고 거짓말. 노동자 실명 발생. 의사에게도 메탄올 사용을 부인. 노동자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실명하게 됨.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4년이 걸림.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연기는 메탄올 사용 중지와 같은 노동부의 각종 시정조치나 명령이 형해화 되고, 제2, 제3의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노동자 실명으로 귀결될 것임.
- 2019년 인천 남동공단내의 세일전자에서 화재로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으나, 세일전자 대표는 집행유예로 풀려남. 세일전자는 2016년 화재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은커녕 보험금을 부풀려 총 6억 7천만 원을 가로챈. 2019년 당시 세일전자는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게 하고, 2개월 전 소방시설 안전 점검도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이 확인됨. 그러나, 법원은 소방 및 전기시설 관리에 직접 연관이 없다며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연기되면 <재해가 발생해도 재발방지 대책 없이 보험금 사기에만 골몰했던 제2, 제3의 세일전자도 처벌하지 못함.

○ 50인(역)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준비 여부만을 중점적으로 제기하는 경영계. 적용이 연기되면 기본조치 이행도, 정부의 점검, 감독도 유명무실하게 되어 중대재해 예방 대책 전체를 포기하는 것.

4. 안전법령 위반 사상사고 처벌에 차등 적용 법률 사례 전무

○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도 사업장 규모 따른 적용 유예 없음

- 노동관계 법령은 적용 유예 등의 차등적 적용이 있으나, 생명 신체를 보호법적으로 하는 법령 중 차등 적용 법안은 없음. 산업안전보건법의 사망에 대한 처벌도 도입된 초기부터 차등 적용은 없었으며, 여타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도 동일함.
- 국내 법령 중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하한형을 두고, 처벌 양형도 높은 법안도 도입 초기부터 차등 적용은 없음.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외국의 법령도 징역형에 사업장 규모 차등은 없음. 한국의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유예가 예외적인 경우임.

법명	주요내용
환경범죄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사람에게 위해 혹은 상수원 오염 : 3년 이상 15년 이하 유기징역. - 위 범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오염물질 배출 : <u>1년 이상</u> 징역 7년 이하 징역 - 환경보호지역 형질 변경 : <u>2년 이상</u> 15년이하 유기징역 - 환경보호지역 설정또는 지적의 목적 상실: <u>5년 이상</u>의 유기징역 - 누범의 가중 : 3년 이내 범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취득가능액의 2배이상 10배이하 벌금 병과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을 <u>성실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u>> 등으로 규정 - 중대한 손괴, 공공의 위협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u>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협을 발생하게 한자. 그밖에 연구주체의 장 또는 연구활동 종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협을 발생하게 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u> - 위 각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5. 50인 미만 사업장 경영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 가능 ?

○ 현장의 쪼개기 계약, 특수고용 노동자 중대재해 처벌 사각지대 확대

- 50인 미만이지만 설비, 기계 등으로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원청은 소수의 관리자만 두고, 수 백명의 하청, 소사장제, 특수고용 노동자를 쪼개기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에서 고용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 시점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현장 현실과 괴리되는 것임.

- 특히 사용 사업장이나 원청이 50인 미만이면서, 수 백명의 노동자를 특수고용으로 고용한다면 법 적용대상에서 빠져나가게 됨. 최근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로 그 실태가 드러나고 있는 배달 노동이 대표적인 사례임.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무제공자의 중대재해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속성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용 사업주에게 일부 안전조치 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음. 50

인(역) 미만 사업장 법 적용유예가 연장되면 날로 증가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중대재해 예방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 받는 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한다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일반 형법 범죄보다 재범비율이 2배 이상 많은 산업안전보건법

-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결 분석 연구/ 노동부> 보고서에서는 2007년부터 2017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중 전과 미상을 제외하고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수가 그렇지 않은 피고인의 수의 약 3.2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함. 당시 보고서에서 2016년의 경우 초범에 대한 재범의 비율이 97%, 재범에 대한 3범의 비율이 65%에 달하고, 이러한 비율은 형법 범죄를 종합한 전과자 비율에서 초범에 대한 재범 비율이 43%인 것과 비교해 매우 높은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재범률이 통상 형사범죄 보다 2배 이상 더 많다는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충격을 주었음.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의 전과 / 출처 범죄분석 (대 검찰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법 적용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021 산업안전공단]**

년도	계	미상	전과 없음	전과									
				소계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 이상
2017	7,285	5,278	482	1,525	471	300	246	153	96	78	52	24	105
2018	7,442	5,734	359	1,349	355	307	205	154	90	66	37	21	114
2019	8,923	7,118	385	1,420	367	305	211	162	93	74	52	32	124
계	23,650	18,130	1,226	4,294	1,193	912	662	473	284	224	148	85	352
비율	100	76	5	18	5	3.8	2.7	2	1.2	0.9	0.6	0.3	1.4

- 그러나, 2021년 연구보고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까지도 동일한 기준으로 초범에 대한 재범 비율은 97%로 재범에 대한 3범의 비율은 76%로 2016년 대비 재범에 대한 3범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함. 3년간 4범도 473명 이고, 9범 이상도 352명에 달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가 일반 형법보다 재범률이 높은 것은 처벌 수준이 낮기 때문임.

○ 사회적 지탄과 양형기준 조정에도 여전한 솜방망이 처벌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낮은 형량과 벌금의 문제는 주지의 사실이나. 그러나, 사회적 지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법 적용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020 산업안전공단]

년도	징역형	금고형
2018	220	83
2019	233	62
2020	184	36
형의 평균 기간	7.53 개월	7.24개월
실형 선고	28명. 4.4%	9명. 5%
집행유예 비율	95.3%	95%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자연인 벌금(만원)	329	415	411	443	420	462	437	423
법인 벌금 (만원)	346	410	444	501	524	515	509	515

- 2018년에서 2020년까지 1심 법원 자유형 선고 판결은 징역형 평균은 7.53개월, 금고형은 7.24개월 임. 실형은 3년간 징역형 4.4%, 금고형 5%에 불과해. 집행유예 비율이 95% 내외임.
- 벌금도 2013년 대비해서는 증가 추세이긴 하나, 2020년 자연인 벌금이 423만원, 법인 벌금이 515만원으로, 2017년과 비슷한 수준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에서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모두 성립한 사례 중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은 2018년 74건에 평균 벌금은 629만원이었고, 2019년에는 76건에 벌금 580만원, 2020년에는 64건에 벌금 569만원이 평균 벌금이었음.
-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1심 법원 판결문 192건 분석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판례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은 111명에 대해 평균 7.37개월 징역형 선고, 금고는 7.4개월 징역형중 1.8%인 2명에게만 실형 선고, 금고형은 모두 집행유예였음. 자연인 평균 벌금은 488만원, 법인 평균 벌금은 599만원이었음.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죄 적용 성립 시 징역형 평균은 8.02개월이고, 벌금은 자연인 629만원, 법인은 727만원임.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낮은 형량에 대한 사회적 지탄으로 대법원 양형기준이 변경되었음. 그러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징역형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양형기준이 없는 벌금만 일부 증가하는 수준에 그침.

○ 산안법 처벌의 48.7%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노동자 처벌도 수 백명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판결문 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누가 처벌되었는가?>를 명확히 분석한 연구보고서는 찾기 어려움. 판결문에 다양한 직급과 단어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임. 또한 전체 판결문 분석이 아니라 <입수된 판결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어서 제한적임.
- 2021년 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법 적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심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피고인의 48.7%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통상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공장장, 지점장, 사업소장, 현장소장이 관리책임자임. 동 연구보고서의 판결문 직책에 따른 분류표를 보면 피고인의 직책이 <대표> 혹은 <대표이사>로 적시 된 것은 2018년에는 피고인 963명 중 6개 빈도, 2019년에는 954명 중 5건의 빈도, 2020년에는 709명 중 7건의 빈도임.
- 경영계의 <노동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동 연구보고서의 2018년에는 업무종사자 88명을 비롯하여 장비기사, 실무책임자, 직원, 안전관리자 등 사업주가 아닌 노동자 약 100여 명이 피고인의 직책임. 2019년 판결문에서도 업무 종사자 47명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133명을 포함하여 사업주가 아닌 관리자, 말단 직원 약 230여명이 피고인의 직책임. 2020년 판결문에서도 업무 종사자 25명을 포함하여 직원, 팀장, 관리 감독자 등 다양한 이름이 말단 관리자 80여명이 피고인의 직책임.
- 이는 판결문의 정확한 분석은 아니고, 산안법과 업무상 과실치사가 병기된 것으로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만 처벌 받는다>라는 식의 주장은 허구라는 것임. 그동안 실제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말단 직원 등이 대부분 처벌받아 왔다는 것임.
- 2023년 노동부 연구보고서인 <50인 미만 사업장 산안법 위반 대표자 형사 처벌 여부> 에서는 2018년 12건, 2019년 95건, 2020년 69건의 <입수된 판결문> 분석을 진행함. 3개년도 입수된 판결문 분석에서 대표자의 77%가 처벌받았다고 분석됨. 입수된 판결문으로 제한되고 있는 점도 있지만, 앞선 연구 보고와 비교해 <대표, 대표이사>의 구분 기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50인 이상 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교 등이 더 분석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1심까지 판결에 소요 기간을 대략 1년으로 본다면 2017년 사고 사망 736건, 2018년 745건, 2019년 660건, 2020년 714건에 비해. 입수된 판결문은 249건임. 이에 대표자의 처벌 분석에 앞서 관련, 50인 미만 사업장의 판결에서 아예 처벌받지 않거나, 약식기소로 된 비율부터 확인될 필요가 있음.

[년도별 산재사망, 사고사망 노동자]

년도	50인미만 산재사망	50인미만 사고사망
2020	1,303	714
2019	1,245	660
2018	1,285	745
2017	1,148	736

[2023년 연구보고서 분석 대상 판결문]

년도	분석 1심 판결문
2021	2
2020	69
2019	95
2018	12

- 동 연구보고서에서 대표자 처벌이 77%에 달하고 있으나, 대표자에 대한 처벌 선고에서 실행 선고는 4년 동안 5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집행유예였고, 벌금형이 다수임을 재확인 할 수 있음

<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자 처벌 선고형 >

처벌 선고형 유형	2018	2019	2020	2021
징역(금고)	0	3	2	0
징역, 집행유예, 사회봉사	5	43	39	1
징역, 집행유예, 벌금	1	6	7	0
벌금	6	42	21	1
계	12	95	69	2

[2023년 50인 미만 기업 산안법 위반에 따른 규율현황 분석/ 한국 노동법학회]

6. 80% VS 40% 경영계 실태조사와 주장의 문제점

- 중기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 법 준수 가능할 것이다. 4월 조사에서는 59.2%, 8월 조사에서는 아무 준비도 못했다 29.7%.

〈중기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실태조사 비교〉

구분	6월 조사	8월 조사
법 준비	법 준수 가능 59.2 % 전혀 불가능 3.2 %	준비하지 못했다 80% 아무 준비 못했다 29.7%
적용시기	법 준수 가능 제외 1년 연기 41.2%	연기 필요하다 85.9%
조사대상	제조,비 제조 각 50% 수도권, 전국 각 50%	제조업 93%
응답자		대표이사 41% 임원 23%

- 중기 중앙회 4월 조사에서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의 법 준수하고 있다는 60.4%이며, 아직 법 적용 9개월 전인 50인미만 사업장의 법 준수가 가능할 것이다 59.2%와 거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
- 동일한 조사기관인 중소기업 중앙회가 2023년 4월 조사에서는 ‘법 준수가 가능할 것이다가 59.2%였고, 전혀 불가능할 것이라는 3.2%임. 그러나, 8월 조사에서는 아무 준비도 하지 못했다 라는 응답이 29.7%이고, 상당부분 준비하지 못했다 라는 응답 50.35%를 합산하여 80%가 준비하지 못했다 라고 통합 발표하고, 보수 언론이 집중 보도함.
- 법 적용시기와 관련해서도 중기중앙회 4월 조사에서는 1년 유예가 41.2%로 가장 높게 나왔으나, 8월 조사에서는 시기는 제외하고 연기는 필요한가 라는 질문만 하여 85.9%의 응답결과에 질문에는 없었던 2년 적용유예를 주장하고 있음.
- 실태조사 세부 구성을 보면 4월 조사에서는 업종이나 수도권과 지역을 안배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나, 8월 조사에서는 93.3%가 제조업이었고, 설문에 응한 대상도 대표이사가 41.5%, 임원이 23.7% 였음. 이는 적용유예 연장을 요구하기 위한 실태조사 설계가 된 것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음.
- 중기 중앙회 등의 2023년 8월 조사에서는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준비하지 못한 이유도, 적용유예 연장의 필요한 이유도 안전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꼽고 있음.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법 적용이 유예되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에서는 안전교육 실시, 보호장비 확충, 자동화 설비 투자를 꼽고 있고, 안전보건 담당인력 확충 또는 전문인력 채용은 5.4%, 안전 전담조직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 확대는 3.5%만 답변하고 있음. 결국 적용 유예가 연장되어도 근본 문제 해결로 기업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1-2)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복수응답 2개)

구 분	사례수 (명)	전문인력부 족	예산 부족	의무이해 어려움	현장 근로자 비협조	기타
전체	(892)	35.4%	27.4%	22.8%	9.8%	4.6%

2-2)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되는 경우 조치 계획 (복수응답 2개)

구 분	사례수 (명)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
전체	(892)	38.0%	14.6%	18.9%	13.7%

구 분	사례수 (명)	안전보건 담당인력 확충 또는 전문인력 채용	안전 전담조직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 확대	경영진의 안전경영·리더십 선포	기타
전체	(892)	5.4%	3.5%	4.0%	1.8%

조사기간 및 기관	조사대상	조사내용
2023.4월 중기 중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500개 기업 - 5인- 50인 미만 250개사/ 50인- 300인 기업 250개사 - 업종, 지역 배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인 이상 사업장 대상 : 법 준수하고 있다. 60.4%. 일부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25.2%. 거의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8.4%. 전혀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1.2% -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법 준수가 가능할 것이다 59.2%. 불가능할 것이다 40.6% (전혀 그렇지 않다 3.2%) -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적용 시기 의견 1년 유예 41.2%. 2년 유예 16.7%, 3년 유예 15.7%, 4년이상 유예 26.5% - 전체대상 : 사업주 처벌방식 개선 별금형으로 개선 8.2%, 처벌 수준 완화 6.4%, 상습 반복사망 형사처벌 43%, 의무내용 명확화 41.6% - 위험성 평가 연 1회 이상 실시 70.2%, 실시한 적 없음 13.6%, 2-3년에 한 번 실시 16.2% - 50인 미만 연 1회 이상 위험성 평가 실시 60.8% -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인건비 지원 사업 활용의사 78.8%
2023.8월 중기 중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인 미만 892개사 - 제조업 93.3% - 직급 대표이사 41.5%, 임원 2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준비를 마쳤다. 1.2%, 상당 부분 준비를 마쳤다. 18.8%,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 50.35%, 아무 준비도 하지 못했다. 29.7% - 모두, 혹은 상당 부분 준비를 마쳤다. 대표이사 16.5%, 임원 17%, 부장 25.7%, 직원 27.3% - 준비하지 못한 이유에서 의무 이해 어려움은 22.8% 전문인력 부족 35.4%, 예산 부족 27.4% - 연장 필요하다 85.9%, 필요하지 않다. 14.1% - 적용유예 연장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축소 및 폐업 고려 16.5% - 유예기간 연장되는 경우 조치 계획 :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정착 38.0%. 개인보호 장비 확충 14.6%, 노후시설 보완등 설비 투자 18.9%, 안전컨설팅 진행 13.7%. 안전보건 담당 인력 확충 또는 전문인력 채용 5.4%. 안전전담 조직 신설 혹은 기존 조직 확대 3.5%
2023.2월 대한 상공회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웨비나 참가 - 5인이상 290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1월 실시 시행 100일 조사 안전보건 업무 담당 부서 설치 기업 45.2 % 2023년 2월 조사에서는 75.5%로 증가, 안전전담 인력을 둔 기업 31.6%에서 66.9% 이상 두배이상 증가 - 중대재해처벌법 이행하고 대응이 가능한 기업 2022년 30.%보다 두배 가량 높은 61.3% - 위험성 평가 실시 기업 92.1% 실시 - 안전 담당 인력 있음. 전담 10.9%, 겸직 75%, 없다. 15.0% - 50인 이하 사업장 기업 규모별 안전 담당 부서 설치 50인 이하 있다. 35.%, 설치 계획 중. 25.%. 없다 40% - 50인 이하 위험성 평가 실시 현황 70%

- 50인(역)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는 ‘조사 대상의 설계’ ‘조사 문안’에 있어서 조사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실제 실태조사 문안과 방향성이 다른 분석 결과나, 데이터의 통합이 있다는 것임.
- 더욱이, 보수 언론은 실태조사나 토론회 등을 왜곡 과장 보도하고 있음. 지난 10월 말 진행된 한국노총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토론회에서 노사를 제외하더라도, 토론자로 참석한 안전보건 전문가나 중대재해 담당 로펌의 토론자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에 대해 반대하는 토론문을 제출했으나, 이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음.
- 왜곡된 실태조사 --> 왜곡된 분석 결과와 보도자료 배포 --> 보수 언론의 기사 물량 쏟아내기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프레임의 의도적으로 형성하고 있음.

○ 노동부 발주 한국안전학회 조사 적용유예 필요하다 20%에 불과. 연구보고서 설문 결과와 분석의 차이 ?

- 법 시행 10개월 전인 2023년 3월 노동부의 의뢰로 한국안전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1,442개 사업장 실태 조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준수 의무를 이미 모두 갖추었다. 22%, 현재 준비 중이라는 59%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함. 안전보건 준수 의무를 갖추었거나 준비 중인 50인 미만 기업이 81%에 달하는 것임.
- 동 실태조사에서는 다른 조사가 <법 준수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과 달리 <내년까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체계>에 대한 질문을 함. 이에 대해 이미 갖추었거나 내년까지 구축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53%이고 어렵다는 응답은 47%였음.
- 이에 동일한 질문인 <법 준수가 가능한가>로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50인미만 기업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체계 구축이 가능한가> 라는 답변에서도 53%가 가능하다고 응답.
- 이는 경제단체가 법 시행 4개월 전인 2021년 9월 적용 대상인 50인(역) 이상 사업장에 대한 조사에서 법 준수 가능함 31.9%, 법 시행 1개월 전인 2021년 12월 조사에서 준수 가능함으로 응답한 46.3%보다 높은 비율임. 특히 50인(역) 미만 사업장 적용 9개월 전인 중기중앙회 2023년 4월 조사에서 59.2%가 이미 법 준수하고 있거나, 법 준수가 가능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내용
경총, 중기중앙회	2021.09	50인이상 314개 기업	- 법 시행일까지 의무 준수 가능 여부. - 전체 가능함 31.9% 어려움 66.5% - 50인- 100인 : 가능함 20.3% 어려움 77.3%,
중기중앙회	2021.12	중소제조업 50인 이상 322개사	- 법 시행일에 맞추어 의무사항 준수 가능 여부 / 가 능 46.3%. 불가능 53.7%
중기 중앙회	2023.04	50인미만 기업 250개사	- 법 준수하고 있거나, 시행일에 맞추어 준수 가능 할 것이다. 59.2%
한국안전학회	2023.03	50인미만 1,442개사	- 안전보건 준수 의무 이미 모두 갖추었거나, 준비 중 이다. 81%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하기 위한 체계 이미 갖추 었거나 내년까지 갖출 수 있다 53%

- 동 연구 보고에서는 법의 13개 의무를 구체적으로 설문지에 명시하고 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모두 알고 있다. 18%, 대부분 알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69%, 전혀 알지 못한다 6%의 응답 결과가 나왔음. 이에 대해 연구 보고 결과에는 경영책임자 의무를 알고 있는 것은 18%에 불과하다고 분석하고 있음. 동일한 조사결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6%로 분석하는 것이 적정한지, 모두 알고 있거나, 대부분 알고 있다가 87%로 분석하는 것인지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분석임.
- 법 시행 10개월 전인 2023년 3월 조사임에 50인 미만 기업의 91%가 안전교육 실시, 종사자에게 안전 활동 보고 받고 있음 75%, 종사자로부터 의견 청취 하고 있음이 89%에 달하고 있음. 중대재해 감축의 중요한 제도로 제기되고 있는 위험성 평가도 알고 있다 84%, 실시하고 있다 67%임. 교육, 종사자 의견 청취, 위험성 평가 등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에 대한 이해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임.
-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 라는 설문에서 법의 적용유예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하고, 처벌 수준 완화도 16%에 불과함. 재정지원 982개(36%) 컨설팅 689개, (25%) 적용유예 557개(20%), 처벌 수준 완화 442개 (16%)로 응답하고 있어 법 적용을 전제로 재정지원이나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1%에 달하고 있음. 이 또한 연구보고서에서는 적용유예 연장이 낮다 라는 응답률에 대한 것보다, 재정지원이나 컨설팅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만 강조되고 있음.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범위 확대 관련 실태조사 2023 노동부 한국안전학회/설문조사 결과]

조사기간/기관	조사 대상	조사내용
2023. 3월 노동부 발주 한국안전학회	50인 미만 사업장 1,442개사 (업종별, 규모별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처벌법 13개 의무 설문지 명기.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의무 알고 있는가 ? - 모두 알고 있다 (18%) 대부분 알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69% 전혀 알지 못한다. 6% ○ 중대법상 안전보건 준수 의무를 이미 모두 갖추었다. 22% 현재 준비 중이다. 59%, 준비하지 않고 있다 18% ○ 내년까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수 있는가? 어렵다. 47% - 이미 갖추었거나, 내년까지 구축이 가능하다. 53% ○ 중대법 적용 이전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 - 재정지원 982개(36%) 컨설팅 689개, (25%)적용유예 557개(20%), 처벌 수준 완화 442개 (16%) ○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인력 또는 조직을 운영 중 46%, ○ 안전보건 교육 수행 91%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서 종사자에게 안전 활동 보고 받고 있다. 75%. 종사자로부터 안전보건 의견 청취하고 있다. 89%. (정기적 의견 청취 38%) ○ 비상 대피 및 구호 조치 매뉴얼 있다. 58% ○ 위험성 평가 알고 있다. 84%, 위험성 평가 실시하고 있다. 67%

○ 50인(억)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 수준이 낮고, 현재 법 시행에 대한 준비가 잘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그러나, 법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영계나 보수 전문가, 보수 언론의 왜곡 과장에 휘둘려 적용 연기로 상당수 기업의 준비 노력을 원점으로 돌리고, <버티면 된다> 라는 인식을 확대해서는 안 될 것임.

7.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투자 확대 및 기업의 인식 변화

발표 기관	주요 내용
2023년 대한상공회 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담당 부서 설치 법 시행 100일 45.2%--> 2023년 75.5%로 증가 - 안전 전담 인력 둔 기업 31. 6%---> 66.9%로 2배 증가 - 법 이행 하고 대응 가능 기업 30%--> 61.3% 2배 증가
2023년5월 중기중앙회	<p>< 중소기업 중대재해 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시행 이후 안전관련 예산/ 인력 증가 50인 이상 사업장 50.4% 증가 - 전혀 그렇지 않다 8.0%
2023년1월 경총 172개사 조사	<p><2023년 산업안전보건 전망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대비 안전보건 투자예산 확대 38.3%, 유지 56.9% 감축 4.8% - 기업의 95.2%가 확대하거나 유지한다고 답변 - 투자 확대 기업의 경우 투자 규모를 45.5%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23.2월 이동선 오태근 연구	<p><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건설현장 관리자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에 대한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공동주택 건설현장 3곳. 각 30명씩 총 90명 조사. 절반 정도가 건설현장 경력이 10년 이상 - 안전시설물 훼손 시 위험을 느끼는가 <p>노동자 중처법 시행 전후 모두 90% 이상이 위험을 느낀다고 답변 관리자는 시행 전 63.3%, 시행 후 매우 그렇다 30%--> 76.7%로 대폭 상승 기업 측면에서 건설재해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환기시켜 관리자 등의 안전의식 향상 의미</p>
경향신문 2023 1월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2021년 환경 안전분야에 5조원 넘는 투자 . 전경련 2022 K-기업 ESG 백서 분석 - 2021년 100대 기업 환경 안전 투자 규모 2021년 약 5조 4,400억. 2020년의 2조 9,000억 대비 87.6% 증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효과로 분석
안전신문 2023. 5월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11일 국토부 국내 22개 철도 운영자 및 철도 시설 관리자 대상 시행 철도안전 관리 수준 평가 결과 - 철도 사고는 2021년 64건에서 79건으로 증가. 안전투자 집행액 2021년 2조2,427억에서 2조6,947억으로 증가, 안전투자 예산 2021년 2조4,482억에서 2022년 2조 8,515억으로 확대 중대재해 처벌법 영향
현장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시행 전후로 노동자의 선제적 작업 거부권 기업 내 제도화 확산 : 삼성물산, 한국 시설공단 - 현장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제도화 - 지자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질 가동, 사측의 참여 활성화, - 위험성 평가 노동조합 참여 실질화 사업장 사례 확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로 경제단체의 각종 조사에 따르면 안전투자는 확대되고, 안전 전담 인력도 증가하고 있음. 2023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는 법 시행 100일 당시 조사에서는 안전보건 담당부서의 설치가 45.2%였으나, 2023년에는 75.5%로 약 1년 6개월 동안 30%가 증가했고, 안전전담 인력을 둔 기업도 2배가 증가했고, 법을 이행하고 대응이 가능한 기업도 30%에서 61.3%로 2배가 증가함. 이는 법의 시행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안전투자와 인력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임.
- 법 시행이후 건설현장의 관리자 및 노동자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도 법 시행이후 기업측면에서 높은 경각심을 환기시켜 관리자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되고 있다는 의미의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일부 기업에서는 안전조치가 안 되어 있는 작업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고, <선 안전조치 요구. 개선 후 작업 실시> 를 현장에 정착시키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특히,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작업 전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인센티브를 직접 부여하고, 개선 요구를 많이 하는 하청 기업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례도 있음.
- 실질적인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이 활성화되고, 경영책임자의 참여도 늘고 있으며, 수 년 동안 거부했던 위험성 평가의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는 사업장도 늘어나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중대재해는 감소 추세였으나, 윤석열 정부의 법 개악에 대한 메시지가 연속으로 나오고, 적용 대상 중대재해에 대한 노동부, 검찰의 수사 기소 처벌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서 중대재해 감축은 실질화되지 않고 있음.
- 중대재해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된 적이 없는 척박한 조건에서 법 적용 대상 사업장 중대재해는 몇 명이 증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는 몇 명이 줄었다는 알팍한 분석이 횡행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흔들기에만 골몰하는 경영계, 보수 언론과 정권의 기조에 따라 알팍한 통계를 근거로 행정실무인력 부족만 내세우며 법 적용 연기를 운운하는 정부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함.
- 경영책임자의 의무 부여와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시행되고 나서야 안전보건관계 법령 준수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함.

8. 법의 확대 강화가 노동자 시민의 여론. 중소기업 80% 법 찬성

- 경영계와 보수 언론의 중대재해처벌법 때리기, 무용론 언론 공세에도 노동자 시민 및 안전보건 전문가들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찬성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월등히 높음.

- 2022년 9월 국회의장실과 헤럴드 경제 조사에서도 법을 강화해야 한다 53.9%, 완화해야 한다는 17.6%에 불과함. 중대재해전문가넷에서 안전보건 전문가 612명 대상 조사에서는 현행 법 처벌이 부족하다가 47.4% 였으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는 77.1%, 중대시민재해 대상 확대에 81.4%가 찬성함.
- 2022년 10월 재단법인 경청의 의뢰로 한국 갤럽이 중소기업 1,0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기업 대상 조사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찬성이 80%였고, 찬성 이유로는 하청에 책임 떠 넘기는 행위 방지가 가장 높았음.
- 2023년 노회찬 재단과 한국 비정규 센터 조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81.5%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 18.5% 보다 훨씬 높았음. 특히, 고용인이 있는 사용자도 75.2%가 법이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를 줄일 것이라는 데 동의함.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법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82.2%로 였음. 법의 처벌 수위가 너무 높아서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72.4%로 동의한다 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특히, 고용인이 있는 사용자도 64.5%는 처벌 수준 완화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2023년 2월 국민 불평등 인식 조사. 한국 비정규 센터, 노회찬 재단. 총 2,000명 조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의견		유고용 사용자	무고용 자영업자	관리 전문직	임금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정규직	비정규직		
중재법은 근로자들의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	전혀 동의하지 않음	3.6	2.8	1.7	3.5	3.4	3.5	3.3	
	동의하지 않음	21.3	16.4	24.8	14.0	11.6	15.0	15.2	
	동의함	57.9	65.3	59.2	66.0	71.1	63.8	65.2	
	매우 동의함	17.3	15.5	14.4	16.6	13.9	17.8	16.3	
안전을 위해 중재법은 더 강화되어야 함	전혀 동의하지 않음	4.1	2.8	2.2	2.7	2.4	2.8	2.7	
	동의하지 않음	23.4	12.7	18.8	14.9	13.6	15.4	15.1	
	동의함	51.8	57.8	52.8	55.1	57.8	54.0	55.2	
	매우 동의함	20.8	26.8	26.2	27.3	26.2	27.7	27.0	
중재법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	전혀 동의하지 않음	9.1	10.8	13.3	12.2	14.3	11.3	12.0	
	동의하지 않음	37.1	54.5	45.4	52.5	51.2	53.0	51.8	
	동의함	45.7	31.0	33.6	30.1	28.9	30.7	31.0	
	매우 동의함	8.1	3.8	7.8	5.2	5.6	5.1	5.3	
중재법의 처벌 수위는 완화되어야 함	전혀 동의하지 않음	13.7	22.5	23.1	21.0	25.1	19.2	21.1	
	동의하지 않음	50.8	51.6	48.4	51.6	50.7	52.0	51.3	
	동의함	27.9	20.7	23.3	21.7	19.8	22.5	21.9	
	매우 동의함	7.6	5.2	5.2	5.8	4.4	6.3	5.7	

9. 대기업은 봐주기 수사,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적용 연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쌍끌이 전략

- 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가 400건이 넘었으나, 9월말 기준 노동부 기소 의견 송치는 83건, 검찰 기소는 25건뿐이고, 불기소한 5건은 사유공개조차 거부하고 있다. 건설노조 탄압에는 압수수색, 구속을 남발하던 검찰은 DL이엔씨 7건, 롯데건설, 현대건설 5건, 철도공사 4건, 세아베스틸 3건 등 연속으로 중대재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음.
- 법 적용 연기는 단순한 시기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 중대재해는 시간 끌기와 불기소 남발로, 중소기업 중대재해는 적용연기로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을 사문화 시켜 법을 무력화 하는 쌍끌이 전략임.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연기되면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했던 중소기업에게는 신뢰를 잃고, 인명을 경시하고 법 적용을 회피했던 기업에게 버티면 된다 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임.
-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 받지 않게> 는 우리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이 동의하는 당연한 요구임.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면서도 기업의 무지에 가까운 인식, 정부의 무대책으로 방치되어 왔음. 대상 사업장의 약 60%가 준비하고 있고, 법 시행을 기점으로 뒤늦게나마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와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임.
- 대상 노동자에게는 더 위험한 사업장에서 죽어도 처벌도 징벌적 손해배상도 없는 차별이며, 법 적용이 연기되면 그나마 진행되던 기업과 정부의 집중대책도 동력을 잃게 될 것임.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전체가 사문화 되어 법의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한 우리사회의 전환점을 상실하고 원점으로 회귀될 것임.
- 50인(억)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예정대로 적용하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공동안전보건관리 제도화 및 정부지원>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임.

[발제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실태에 대한 평가

-2022. 1. 27.~ 2023. 10. 31. 기소 및 판결 비교 분석

권영국 | 변호사,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I. 공소장 비교 분석

1. 공소장의 사고유형 및 주요내용

가. 2022년 기소 사건

	기소일자	지검명	업체(공사명)	사고유형	주요내용	판결
1	22.06.27	창원지검	두성산업 (제조업)	급성중독	'22. 2. 16. 에어컨 동판 제조 작업장에서 유해물질(트피클로 로메탄)에 노출된 작업자 16명 독성 간염 발병	1심 선고 (23.11.03)
2	22.10.19	대구지검 서부지청	(주)LDS산업개발	추락사	'22. 3. 29. 공장 신축공사 현 장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중 하 도급 근로자 1명 추락사(11m)	
3	22.11.03	통영지청	삼강에스앤씨(주)	추락사	'22. 2. 19. 선박수리 도크에서 하도급 근로자 난간 보수작업 중 1명 추락사	
4	22.11.03	마산지청	한국제강 (제조업)	중량물 낙하 협착	'22. 3. 16. 철강공장에서 방열 판(1.2톤) 낙하로 다리가 방열판 과 바닥 사이에 협착, 실혈성 쇼크 1명 사망(하도급 근로자)	1심 선고 (23.04.26) 2심 선고 (23.08.23) 3심 확정
5	22.11.30	고양지청	건륭건설	철근 낙하 머리 충격	'22. 3. 9. 고양시 덕양구 상가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청업체 근로자 가 크레인으로 인양 중인 철근(약 190kg) 낙하 머리 충격, 1명 사망	1심 선고 (23.10.06)
6	22.11.30	고양지청	온유파트너스	추락사	'22. 5. 14.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원청으로부터 철공공 사를 하도급 받은 하청업체의 근로자 가 안전대 없이 5층에 (16.5m)에서 앵글 인양 작업 중 1명 추락사	1심 선고 (23.04.06) 항소 포기 확정
7	22.12.27	울산지검	엠텍	끼임 사망	'22. 7. 14. 자동차부품 제조업 체에서 주조기계 내부 금형 청	

					소 작업 중 머리 협착, 네팔 국적 노동자 1명 사망	
8	22.12.29	인천지검	시너지건설	충격 전도 머리 부딪힘	'22. 3. 16.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수와 철근배근작업공사를 재재재하도급받은 업체 근로자 가 철제과이프(동바리)에 충격, 전도 머리 부딪혀, 1명 사망	1심 선고 (23.06.23)
9	22.12.29	마산지청	만덕건설	굴착기 끼임 사망	'22. 5. 19. 가압장 개선사업 공사현장에서 토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청업체 근로자 가 선회 하던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머리 협착, 1명 사망	1심 선고 (23.08.25)
10	22.12.29	춘천지검	태성종합건설	추락사	'22. 2. 26. 춘천교육지원청 신축공사 현장에서 태성종합건설(시공사) 소속 근로자 가 벽체 철거 작업 중 비계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 1명 사망	
11	22.12.30	제주지검	제동종합건설	구조물 낙하 충격	'22. 2. 23. 제주대 생활관(기숙사) 신축공사장에서 해체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근로자 가 해체공사 중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져 1명 사망	1심 선고 (23.10.18)

나. 2023년 기소 사건

	기소일자	지검명	업체(공사명)	사고유형	주요내용	판결
12	23.02.14	대구지검 서부지청	평화오일셀 공업(주)	공구 머리 충격	'22. 2. 9. 원청 사업장에서 하청 업체(개인사업자) 근로자 가 압축성 형기에서 튕겨 나온 플라스틱 공구에 머리를 부딪혀 3. 10. 사망	
13	23.03.17	대구지검 서부지청	홍성건설 '블루핀'	굴착기 깔림	'22. 6. 8. 홍성건설이 경북 성주군으로부터 발주받은 성주군 가천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를 이용해 상수도 배수관로 되메우기 작업 중 노면 정리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70대) 후진하는 굴착기에 충돌한 후 깔려 사망	
14	23.03.31	의정부지검	(주)삼표산업	토사붕괴 매몰	'22. 1. 29. 경기도 양주시 (주)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분토 야적장에서 토석체취를 위한 천공 작업 중 대규모 토사 붕괴로 근로자 2명과 굴착기 지입차주 1명 이 매몰되어 사망	
15	23.05.04	울산지검	신성산업	끼임 사망	'22. 5. 26. 울산 소재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공장에서 근로자 가 사출성형기 내 스크랩 제거작업 중 금형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여 1명 사망	
16	23.05.08	부산지검	성무건설 (업무시설 신축공사)	끼임 사망	'22. 3. 25. 부산 연제구 소재 업무시설 증축공사장에서 하도급 근로자 가 주차타워 내부 단열재 작업 중 리프트에 끼여 1명 사망	

17	23.05.22	순천지청	현대스틸산업	끼임 사망	‘22. 4. 20. 해상 철구조물 제조공장 쇼트작업장에서 지게차로 금속 파이프 이적 작업 중 파이프가 굴러내려 하청업체 근로자 가 파이프에 끼여 1명 사망	
18	23.06.02	서울중앙지검	제효	추락사	‘22. 3. 25. 서울 서초구 소재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가 추락하여 1명 사망	
19	23.06.05	청주지검	우진플라임	끼임 사망	‘22. 2. 24. 충북 보은 소재 사출성형기 주조공장에서 천정크레인 탈사 설비 조립작업 중 하청업체 근로자 가 조작 실수로 탈사기가 하강하여 탈사기에 끼여 1명 사망	
20	23.06.14	서울북부지검	국제경보산업	추락사	‘22. 4. 15.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현관에서 천정 누수 확인 작업을 하던 아파트 설비과장(60대 근로자) 이 1.5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1명 사망	1심 선고 (23.10.12)
21	23.07.21	대전지검	동일스위트	추락사	22. 3. 8.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가 2층 발코니에서 콘크리트면을 그라인더로 다듬던 중 5.7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	
22	23.07.27	대구지검 서부지청 (4번째)	정안철강	철판에 허벅지 베어 사망	‘22. 9. 15. 대구 달성군 청강가공품 제조업체에서 철강제품 생산설비에 원자재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 가 초속 3.6m로 자동 투입되는 철판 위를 넘어가다가 철판에 허벅지를 베어 사망	
23	23.08.25	수원지검 평택지청	SPC 계열사 에스피엘(주)	식품배합기 끼임 사망	‘22. 10. 15. SPL평택공장 냉장샌드위치 라인 소스배합실에서 근로자(23, 여) 가 소스 교반기에 거꾸로 끼여 질식사망	
24	23.09.05	수원지검 안산지청	대일개발	폭발 사망	22.3. 29. 10:23경 안산시 단원구 시화공단 내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의 하청업체 근로자 2명 이 공장 내 폐기물 저장탱크 위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가연성 유증기가 용접기 불꽃으로 인해 폭발해 모두 사망	
25	23.09.13	대구지검 영덕지청	지디종합건설	끼임 사망	022. 7. 4. 경북 영덕 소재 지방상수도 정비 공사현장에서 지디종합건설(시공사) 소속 근로자 가 폐콘크리트 상차 작업 중 화물차 시동을 켜 상태로 운전석 이탈, 트럭이 운전기사를 향해 미끄러지면서 담벼락과 화물차 사이에 끼여 사망	
26	23.10.16	수원지검 안산지청	건설업체	감전 사망	2022. 8. 8. 정오께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가 내리는 야외에서 전기그라인더로 철근 절단작업을 하던 50	

					대 중국인 근로자가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27	23.10.19	대구지검	골판지 제조업체	끼임 사망	2023. 3. 30. 오후 4시 40분께 경산시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윤활유를 골판지 제조 기계에 주입하던 중 기계 회전축에 끼여 사망	상시근로자 97명
28	23.10.31	서울북부지검	아파트 관리업체	추락사	2022. 6. 서울 성북구 소재 아파트 1층 출입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3m 높이의 사다리에서 천정등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	

2. 공소장의 기업(공사) 규모 및 재해근로자 소속

1. 두성산업(A회사) 상시 근로자 250명(재해 근로자 10명)/ B회사 상시 근로자 48명(재해 근로자 6명)³⁾
2. 공장 신축공사 78억원, (주)LDS산업개발에 도급/ 철골공사 3억 1,900만원에 하도급(재해 근로자 1명)
3. 삼강에스엔씨(주)(선박 수리)/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 공사 하도급(사망재해 근로자 1명)
4. 한국제강 상시 근로자 340명/ 제강 및 압연 일용보수작업 강백산업(개인사업자)에 도급(재해 근로자 1명)
5. 상가신축공사 88억원, 건륭건설에 도급/ 철근콘크리트 공사 14억 3천만원에 하도급(재해 근로자 1명)
6. 요양병원 증축공사 81억 3,890만원, 온유파트너스에 도급/ 철골 등 공사 6억 9,800만원에 하도급(재해 근로자 1명)
7. 엠텍 양산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상시 근로자 60여명(재해 근로자 1명)
8.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72억 5,120만원, 시너지건설에 도급/ 형틀목수와 철근배근 작업공사 9억 6,800만원에 재재하도급(재해 근로자 1명)
9. 가압장 개선사업 공사 155억 2,150만원, 만덕건설에 도급/ 토공사 23억 4,020만원에 하도급(재해 근로자 1명)
10.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신축공사 89억 9,890만원, 태성종합건설에 도급(재해 근로자)
11. 제주대 기숙사 신축공사 381억 8,760만원, 제동종합건설에 도급/ 해체공사 4억 500만원에 하도급(재해 근로자 1명)
12. 평화홀딩스 계열사 평화오일셀공업(주) 상시 근로자 980여명 / 하청업체(개인사업자)에 베어링셀 제작업무 도급, 하청업체 상시 근로자수 38명(재해 근로자 1명)
13. 경북 성주군 발주 급수구역 확장사업 공사 87억원, (주)홍성건설에 도급/ 16억원에 하도급(재해 근로자 1명)
14. 삼표그룹 계열사 (주)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토석채취장(회사 상시 근로자 930명, 양주사업소 53명), 삼표산업 소속 재해 근로자 2명 / 재해 근로자 1명 - 굴착기 지입차주(특수고용직)

15. ○○ 산업 산업용 플라스틱 용기 제조 및 판매업 법인, 충북 공장, 울산공장 등 **상시 근로자 200명(재해 근로자 1명)**
16. 업무시설 증축공사 60억7천만원 도급/ 기계식 주차설비 단열공사 **8,085만원에 하도급 (재해근로자 1명)**
17. F사 해상교량, 해상철구조물 제조업체, **상시근로자 210여명 / 하청업체 G사(철구조물 제작 및 도장작업 전문업체) 도장 공사 계약(78,778,153원) 상시근로자 23명(재해 근로자 1명)**
18.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66억 4,378만원에 도급 (재해 근로자 1명)**
19. 사출성형기 제조 주조공장 상시 근로자 540명 / 개인사업자에게 **탈사설비 정비.보수 작업을 도급 (재해근로자 1명)**
20. 공동주택 관리 회사, **아파트 관리 위탁 계약 체결 (재해 근로자 1명)**
21.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아파트 신축공사 / **골조공사 12,854,996,600원에 도급(재해 근로자 1명)**
22. 정안철강 **철강 가공품 제조회사 (재해 근로자 1명), 상시 근로자 100명**
23. **에스피엘(주) 상시 근로자 1,135명 (재해 근로자 1명)**
24. 대일개발(주) 안산시 단원구 시화공단 내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상시 근로자 95명 / **하청업체(소각로 제조업체)에 저장탱크에 펌프 및 배관 추가 설치 도급 공사계약 상시근로자 20명 (재해근로자 2명)**
25. 경북 영덕 소재 지방상수도 정비 공사 **5,246,222,450원, 지디종합건설에 도급(재해 근로자 1명)**

첫째, 2023. 10. 31.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된 기업 내지 건설공사는 상시근로자수 60명 ~ 1,135명인 법인, 공사금액 52억원 ~ 381억원 규모의 건설공사임.

둘째, 공소장 25건 중 건설공사가 13건이고 제조업이 10건이고, 토석채취업이 1건, 아파트 관리업 1건임.

셋째, 재해근로자의 소속을 보면, 원청인 경우 8곳이고, 원청과 하청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2곳,⁴⁾ 하청인 경우 15곳임(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발주를 받아 시공을 주도한 시공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도급인으로 보아 기소함).

넷째, 공소장 25건 중 원청과 하청이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기소된 경우는 1건임. 1건을 제외하면 하청업체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인 관계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대상임.

3) A회사(두성산업)와 B회사의 대표이사 동일함. B회사는 50인 미만 사업장인 관계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 다른 법률로 기소함.
4) 두성산업(주)과 ㈜삼표산업을 여기에 포함시켰다.

3. 공소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주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주 - 도급인(원청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주(피고인)	
1	피고인 두성산업 (재해 근로자)
2	주식회사 C○ 첨단산업(발주) ⇒ (도급) 피고인 (주)LDS산업개발 ⇒ (하도급) A○중공업(재해 근로자)
3	자○○ 해운 주식회사(발주) ⇒ (도급) 피고인 삼강에스앤씨(주) ⇒ (하도급) 주식회사 다○○ (재해 근로자)
4	피고인 한국제강 주식회사 ⇒ (도급) 강백산업(개인사업자, 재해 근로자)
5	주식회사 C(발주) ⇒ (도급) 피고인 진룡건설 주식회사 ⇒ (하도급) 주식회사 A(재해 근로자 - 일용직)
6	김○○(발주) ⇒ (도급) 피고인 주식회사 온유파트너스 ⇒ (하도급) 주식회사 A(재해 근로자)
7	피고인 주식회사 엠텍 (재해 근로자)
8	주식회사 C○(발주) ⇒ (도급) 피고인 주식회사 시너지건설 ⇒ 주식회사 D○건설 ⇒ 주식회사 E○ ⇒ (재제재하도급) 주식회사 B○(재해 근로자)
9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발주) ⇒ (도급) 피고인 만덕건설 주식회사 ⇒ (하도급) 주식회사 A건설(재해 근로자)
10	춘천교육지원청(발주) ⇒ (도급) 피고인 주식회사 태성종합건설 (재해 근로자)
11	E○○ 주식회사(제주대)(발주) ⇒ (도급) 피고인 제동종합건설 주식회사 ⇒ (하도급) D○철거산업 주식회사(재해 근로자)
12	피고인 평화오일셀공업 주식회사 ⇒ (도급) A○산업(재해 근로자)
13	경북 성주군(발주) ⇒ (도급) 피고인 주식회사 흥성건설 ⇒ (하도급) A○건설 주식회사(재해 근로자)
14	피고인 주식회사 삼표산업 (재해 근로자)
15	플라스틱 용기 제조, 피고인 주식회사 신성산업 (재해 근로자)
16	C○자산신탁주식회사(발주) ⇒ (도급) 피고인 성무건설 주식회사 ⇒ (하도급) B○산업 주식회사 (재해 근로자)
17	해상 철구조물 제조, 피고인 현대스틸산업 ⇒ (도급) G사 (재해근로자)
18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주식회사 Z(발주) ⇒ (도급) 피고인 주식회사 제효 (재해 근로자)
19	사출성형기 제조, 피고인 우진플라임 주식회사 ⇒ (도급) F회사 개인사업자 (재해 근로자)
20	입주자대표자회의 ⇒ (위탁) 피고인 공동주택 관리회사 국제경보산업 주식회사 (재해 근로자)
21	피고인 주식회사 동일스위티(시공사) ⇒ (도급) 피고인 주식회사 H (재해 근로자)
22	피고인 정안철강 주식회사 (재해 근로자 1명)
23	피고인 에스피엘 주식회사 (재해 근로자 1명)
24	피고인 대일개발 주식회사 ⇒ (도급) 주식회사 BO (재해 근로자 2명)
25	○○○○○공사(발주) ⇒ (도급) 피고인 지디종합건설 주식회사 (재해 근로자 1명)

건설공사의 경우에 건설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발주(도급)를 받은 시공사에게 도급인의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기소함. 이는 아래의 대검찰청 벌칙해설서의 해설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임.

- *대검찰청 벌칙 해설 내용 (대검찰청 벌칙 해설 235~247쪽)

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수급인 등 제3자의 종사자에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위험작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이 외주화를 통해 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들에 대한 책임 부담 없이는 산업재해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산업현장의 실태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 제5조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4조에서 규정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개념(법 제2조 제7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뿐만 아니라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종사자를 모두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안이 법 제4조로 포섭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 제5조는 법 제4조의 보충적 조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하고 법 제4조에 포섭이 되지 않는 특별한 사항에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인정된다면 보충적으로 법 제5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는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발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일종에 해당하지만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구분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담할 필요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건설공사발주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면 도급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발주는 민법상 도급계약의 일종이지만 발주자는 종사자가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운영을 하는 자가 아닌 주문자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을 다시금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으로 구별하여 규정하는 것은, 비록 발주자의 경우 주문자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설계 변경 등 발주자가 건설업에서의 영향력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에 한하여 다른 발주자의 경우와 다르게 고유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

- 안전보건관련 대장작성 및 그 이행 여부 확인의무(제67조)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제68조)
- 공사기간단축 및 공법 변경금지 의무(제69조)
- 건설공사기간의 연장의무(제70조)
- 설계변경 의무(제71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제72조)

결국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기간 동안 해당 공사 또는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시공을 총괄·관리하지 않는 건설공사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중략)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도급, 용역, 위탁 ‘등’ 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등’의 범위에 ‘임대, 발주’의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도급, 용역, 위탁 외에 ‘임대, 발주’는 법안심사 논의 중 삭제로 정리된 점에 비추어 ‘임대, 발주’의 경우 바로 포함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개별 사안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건설공사들의 경우, 해당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을 주도하고 총괄·관리한 시공사에게 도급인(원청업체)의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함. 즉, 최초로 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들에게는 도급인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였는데, 공사를 최초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들의 경우 해당 공사에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도급인 책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물론 건설공사발주자라 하더라도, 해당 공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임. 나아가 시공사와의 공법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경영책임자

1) 쟁점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규정에서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법 제2조 제9호 가목)으로 정하고 있는바, 주로 문언상 ‘또는’이라는 표현을 두고 양자택일의 선택적 규정이라는 주장과 양쪽 모두

의무 주체로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보완적 규정이라는 주장으로 논쟁이 벌어짐. 그리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형식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해석할 것인지를 두고도 논란이 있음.⁵⁾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경영책임자

	기소일자	지점명	적용업체 (공사명)	경영책임자
1	22.06.27	창원지점	두성산업 (제조업)	두성산업 대표이사 (○)
2	22.10.19	대구 서부지청	LDS산업개발	LDS산업개발 대표이사 (○) - 중처법위반 건축부 이사 - 현장소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업과사, 산안법 위반
3	22.11.03	통영지청	삼강에스엔씨 (제조업)	삼강에스엔씨 대표이사 (○) - 중처법위반 수리사업팀 이사 - 관리감독자 / 업과사

5)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책임을 면책하기 위해 별도로 정의한 ‘건설공사발주자’의 개념에 관한 매우 의미있는 최근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187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갑문 정기보수공사를 발주한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할 뿐,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따라서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의 안전보건의무위반치사죄가 성립하지 않고, 인천항만공사에 제173조를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에 있어 핵심 쟁점은, 인천항만공사가 피고인 ○○○ 주식회사에게 인천항만 갑문 정기보수공사를 도급하여 건설공사를 하게 하였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즉, 인천항만공사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도급인”인 사업주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고, 반대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의 의미는 사실상 의미에서 실제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의해 판별해야 한다고 하겠다.** 원래 법원의 법률 해석과 적용 작업이란 규범적 해석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반대로 사실에 맞추어 규범을 해석하는 것은 논리의 역전이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렇게 산업안전보건법을 해석해야만 하는 실질적인 이유를 들자면 이렇다. 즉, 만약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의 의미를 경험적으로 사실상 의미에서 실제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의해 판별하지 않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참을 수 없는 부당한 해석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곧,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그와 같은 책임을 방기하고 실제로 총괄·관리하지 않은 도급인은 산업안전법이 정하는 의무를 면하고,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는데도 수급인의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산업재해발생 예방조치를 취하였는데도 산업재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안의 도급인은 처벌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은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해석하여 적용하면, 그로 인해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라는 ‘갑질’이 산업현장에 만연하는 불평등 산업구조 형성을 법원이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4	22.11.03	마산지청	한국제강	한국제강 대표이사 (○) - 경영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중처법위반, 산안법위반, 업과사
5	22.11.30	고양지청	건륭건설	시공사 대표이사 (○) - 중처법위반
6	22.11.30	고양지청	온유파트너스	시공사 대표이사 (○) - 중처법위반
7	22.12.27	울산지검	엠텍 자동차부품 제조업	엠텍 대표이사 (○) -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중처법위반, 산안법위반 엠텍 총괄이사 - 대표이사 보좌 안전관리, 재해예방을 포함하여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 / 업과사
8	22.12.29	인천지검	시너지건설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시공사 대표이사 (○) - 중처법위반 시공사 이사 - 현장소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안법위반, 업과사
9	22.12.29	마산지청	만덕건설	시공사 대표이사 (○) - 중처법위반 시공사 이사 - 현장소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안법위반, 업과사
10	22.12.29	춘천지검	태성종합건설	시공사 대표이사 (○) - 중처법위반
11	22.12.30	제주지검	제동종합건설 (제주도 기숙사 신축공사)	시공사 대표이사 (○) - 중처법위반 시공사 건축이사 - 관리감독자 / 업과사
12	23.02.14	대구지검 서부지청	평화오일셀 공업(주)	평화오일셀공업 대표이사 (○) - 경영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중처법위반, 산안법위반
13	23.03.17	대구지검 서부지청	(주)홍성건설 '블루핀'	시공사 대표이사 (○) - 경영책임자 / 중처법위반, 시공사 현장소장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안법위반, 업과사
14	23.03.31	의정부 지검	(주)삼표산업	삼표그룹 회장 (○) - 경영책임자 / 중처법위반 회사 대표이사 - 산안법위반, 업과사 회사 양주사업소장 - 산안법위반, 업과사 회사 생산담당 임원 겸 안전관리책임자(CSO) - 업과사
15	23.05.04	울산지검	신성산업	신성산업 대표이사 (○) - 경영책임자 / 중처법위반 PL사업본부 부분부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6	23.05.08	부산지검	성무건설 (업무시설 신축공사)	시공사 대표이사 (○) - 경영책임자 / 중처법위반 시공사 이사 겸 현장소장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안법위반, 업과사
17	23.05.22	순천지청	현대스틸산업 (해상 철구조물 제조공장)	현대스틸산업 대표이사 (○) - 경영책임자 / 중처법위반 회사 토목사업실장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안법위반, 회사 관리감독자 - 업과사
18	23.06.02	서울중앙 지검	제효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시공사 대표이사 (○) - 경영책임자 / 중처법위반 시공사 - 중처법위반, 산안법위반
19	23.06.05	청주지검	우진플라임 (사출성형기 제조 회사)	우진플라임 대표이사(○) - 경영책임자 / 중처법위반 회사 상무이사 & 주조공장 공장장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 안법위반, 업과사
20	23.06.14	서울북부 지검	국제경보산업 (공동주택 관리 회사)	국제경보산업 대표이사 (○) - 경영책임자 / 중처법위반 아파트 관리소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안법위반, 업과사
21	23.07.21	대전지검	동일스위트	시공사 대표이사 (○) - 경영책임자 / 중처법위반 수급업체 대표이사 (○) - 경영책임자 / 중처법위반
22	23.07.27	대구지검 서부지청(4 번째)	정안철강 (철강 가공품 제조회사)	정안철강 대표이사 (○) -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중 처법위반, 산안법위반
23	23.08.25	수원지검 평택지청	SPC 계열사 에스피엘(주)	에스피엘 대표이사 (○) -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중 처법위반, 산안법위반, 업과사 공장장 등 3명 업과사
24	23.09.05	수원지검 안산지청	대일개발	대일개발 대표이사 (○) -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중처법위반, 산안법위반, 업과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25	23.09.13	대구지검 영덕지청	지디종합건설	지디종합건설 대표이사 (○) - 경영책임자 / 중처법위반 현장소장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안법위반, 업과사
----	----------	--------------	--------	--

첫째, 25건 공소장 사례에서 23건은 원청 대표이사를, 1건은 원청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회장을, 1건은 원청과 하청 대표이사 모두를 경영책임자로 판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함.

둘째, 엠텍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대한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안전보건 총괄이사, 소위 안전경영책임자(CSO)를 별도로 두었으나 검찰은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판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⁶⁾로, 총괄이사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여 기소함.

셋째, (주)삼표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의 경영권 행사를 보좌한 것으로 판단하여) (주)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대비하여 신설한 안전경영책임자(CSO)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대비하여 안전경영책임자 직위를 신설하되 2021. 9.경 생산담당 임원이 그 지위를 겸하고 그에게 안전보건 담당 직원을 관장하며 안전사고 등 관련 전결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안전경영책임자 운영안을 최종 승인하였고, 그 후 2022. 1. 1.경 (주)삼표산업 생산담당 임원인 사○○을 안전경영책임자로 선임하였다. 사실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동법 시행 전과 같이 피고인 삼표그룹 회장에게 최종 보고되었고, 피고인이 실무자들에게 사고 처리에 대하여 중국적으로 지시하고 처리하여 왔는바, 대표이사 이종신과 안전경영책임자인 사○○에게는 실제 안전사고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없었고, 여전히 피고인이 안전사고 관련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였다.” 이종신 대표이사는 단지 그룹회장의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고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에 그쳐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3) 대검찰청 벌칙 해설 내용 (해설서 96-98쪽)

(나) 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경영책임자

1)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전단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해당 사업의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대표자(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갖는 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는 비판적 고려에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이다.

다만, 형식적인 지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6) 엠텍은 상시근로자수 60여명 정도로 작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겸임하고 있었음.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고유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에 관한 법령, 정관 등에 근거하여 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동시에 대내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해당 사업에서의 직무, 책임과 권한 및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책임자들을 특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후단의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면서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책임자에 준하여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최고책임자라 하더라도 사업 경영대표자 등으로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의사 결정권을 위임받은 경우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 즉, ‘이에 준하여’라는 요건을 명시한 취지를 고려할 때 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는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사업 경영대표자 등으로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의사 결정권을 위임받은 정도에 이르러야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장소장, 공장장과 같이 회사가 보유한 개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들에 포섭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안전보건 담당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영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회피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법인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둔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과 안전보건 담당이사를 모두 경영책임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킬지, 안전보건 담당이사만을 경영책임자로 보고 대표이사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인지에 관하여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산업 안전보건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점, 법문언상 ‘또는’의 의미와 관련하여 양자택일의 의미가 아니라 양쪽 모두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서 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법령에서 부과한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함으로써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허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안전보건 담당이사가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 실질적이면서 가장 밀접하게 해당조치와 관련한 최종적인 권한과 의무를 가진 자를 형사책임의 주체로 검토함이 상당하다.

4) 소결

첫째,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안전보건 담당이사’(CSO)를 선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영

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회피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공소장 내용을 보면, 안전보건 담당이사가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 실질적이면서 가장 밀접하게 해당조치와 관련한 최종적인 권한과 의무를 가진 자를 형사책임의 주체인 경영책임자로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둘째, (주)삼표산업 사건에서 형식적인 지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룹회장의 경영권 행사를 보좌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회장을 경영책임자로 판단함.

셋째, 하나의 사업에 복수의 대표이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누구를 경영책임자로 판단할 것인지 문제가 됨. 한국제강 사건 당시 한국제강의 대표이사는 하종식과 성형식이었으나, 사주인 하종식을 제외하고 월급사장인 성형식 1인만을 기소함.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그룹회장을 기소한 삼표산업 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제강의 기소는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적용 유형과 내용

가. 쟁점

14건의 공소장 사례에서 13건의 경우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 규정만을 적용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하였음. 단, 법 시행 후 반기가 지나 발생한 1건에 대해서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 규정과 함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의무 규정을 적용하여 기소함.

그동안 재계와 이들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벌의 구성요건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모호하고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오고 있음.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불명확한 것인지 실제 공소장 사례를 통해 검토함.

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

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의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는 그 이행주체를 사업주(법인 혹은 개인사업주)로 규정하고 있으나, 양별규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체제를 구성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 관련 책임자

내지 담당자들을 행위자로 처벌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혹은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조치를 직접적으로 하여야 할 의무임.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그 이행 주체를 경영책임자 혹은 개인사업주로 규정하고, 그 이행 주체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를 해야 할 의무로 열거하고 있음.

즉,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사업의 경영 차원에서 안전에 관한 근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사업장 내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세부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대검찰청 벌칙해설서 164쪽).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근본적인 목적은 중대재해의 예방인 점에서 1차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해 이력, 현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 발생 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함. 나아가 확인된 중대재해 유해·위험 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거나 지속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 및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 확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직, 인력, 예산의 투입과 점검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임(대검찰청 벌칙 해설 164쪽).

그러므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고 점검하기 위한 경영상의 의무로서 그 핵심내용은 안전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어 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절차적 의무라고 할 수 있음.

이를 위해 법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열거조항으로 그 대강을 정하고,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므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법과 시행령 규정을 종합적으로 보아 그 명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

라. 공소장에 적용하고 있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유형

위 1~25번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사건(25건)에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실제로 적용된 의무 내용은 아래와 같음.

	업체(공사명)	재해일시	사고유형	안전보건 확보의무 적용 내용
1	두성산업 (제조업)	22.02.16	급성중독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제3호) (x) ②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 기준 마련(제5호) (x) ⇒ 피고인은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하여 독성 간염의 상해를 입게 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함.
2	LDS산업개발	22.03.29	추락사	①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제1호) (x) ②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제3호) (x)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마련(제5호) (x) ④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등 마련(제9호) (x)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함.
3	삼강에스엔씨 (제조업)	22.02.19	추락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 마련(제5호) (x) ②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제7호) (x) ③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대한 기준 마련(제9호) (x) ⇒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인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4	한국제강	22.03.16	중량물 낙하 협착	①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 마련(제5호) (x) ②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마련(제9호) (x)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B산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위 가○○이 제1의 가항 기체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게 하여...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5	덕양구 상가신축공사	22.03.09	철근 낙하 머리 충격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 절차 마련(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절차만 규정)(제3호) (x)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p>평가하는 기준 마련 (제5호) (x)</p> <p>③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마련 (제9호) (x)</p> <p>⇒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p>
6	요양병원 증축공사	22.05.14	추락사	<p>①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 절차 마련(제3호) (x)</p> <p>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 마련(제5호) (x)</p> <p>③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매뉴얼 마련(제8호) (x)</p> <p>⇒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p>
7	엠텍 자동차부품 제조업	22.07.14	기계 협착	<p>①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제3호) (x)</p> <p>②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을 평가하는 기준 마련(제5호) (x)</p> <p>③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위험요인 제거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제8호) (x)</p> <p>⇒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p> <p>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다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p> <p>⇒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아니함.</p>
8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공사	22.03.16	충격	<p>①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제1호) (x)</p> <p>②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제3호) (x)</p> <p>③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제4호) (x)</p> <p>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마련(제5호) (x)</p> <p>⑤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제7호) (x)</p> <p>⑥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위험요인 제거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제8호) (x)</p> <p>⇒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위 나○○이 2022. 3. 16. 09:40경 범퍼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게 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p>
9	만덕건설	22.05.19	굴착기 협착	<p>①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제1호) (x)</p> <p>②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p>

				<p>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제4호) (x)</p> <p>③ <u>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 마련(제5호) (x)</u></p> <p>④ 협착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매뉴얼 마련(제8호) (x)</p> <p>⇒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B건설 주식회사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다○○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현장 종사자 마○○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p>
10	춘천교육지원청 이전공사	22.02.26	추락사	<p>①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제1호) (x)</p> <p>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 마련(제5호) (x)</p> <p>③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제7호) (x)</p> <p>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구호조치,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매뉴얼 마련(제8호) (x)</p> <p>⇒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망자 발생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p>
11	제주대 기숙사 신축공사	22.02.23	구조물 낙하 충격	<p>①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제1호) (x)</p> <p>②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 절차 마련(위험성 평가 지침 규정 기준 전혀 반영하지 못함)(제3호) (x)</p> <p>③ <u>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마련(제5호) (x)</u></p> <p>④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제7호) (x)</p> <p>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매뉴얼 마련(제8호) (x)</p> <p>⇒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p>
12	평화오일셀 공업(주)	22.02.09	공구 충격	<p>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제2호) (x)</p> <p>②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 절차 마련(제3호) (x)</p> <p>③ 산안법상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배치(제6호) (x) -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에도 안전관리자를 1명만 배치함.</p> <p>⇒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p>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3	(주)홍성건설 '블루핀'	22.06.08	굴착기 후진 역과	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제2호) (x) ②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 절차 마련(제3호) (x) ③ 도급·용역·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마련 (제9호) (x) ⇒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14	(주)삼표산업	22.01.29	토사붕괴 매몰사망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 절차 마련(제3호) (x) 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대비하여 등 작업중지, 근로자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등에 대한 매뉴얼 마련(제8호) (x) ⇒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들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15	신성산업 플라스틱 용기 제조 회사	22.05.26	협착 사망	①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블로우 성형 작업시 협착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함(제5호) -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 마련(제5호) (x) ② 피고인은 공장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였다면, 공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 노후화된 컨베이어 벨트 등을 수리·교체하고, 방호장치의 임의 해제가 불가능한 방호장치를 설치하며, 안전한 스크랩 제거 방안을 수립하여 교육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제7호) ⇒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6	성무건설 (업무시설 신축공사)	22.03.25	협착 사망	① 피고인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함(제3호) ②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함(제7호) ③ 업무를 도급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도급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및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아니함(제9호).
17	현대스틸산업 (해상 철구조물 제조공장)	22.04.20	협착 사망	① 피고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함(제3호)
18	제효	22.03.25	추락사	① 피고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p>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함(제3호)</p> <p>②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되는지 관리하지 아니함(제4호)</p> <p>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함(제5호)</p>
19	우진플라임 (사출성형기 제조 회사)	22.02.24	협착 사망	<p>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 인력이 총 5명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40명임에도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지 아니함(제2호).</p> <p>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함(제3호)</p>
20	국제경보산업 (공동주택 관리 회사)	22.04.15	추락사	<p>① 피고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함(제1호)</p> <p>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함(제3호)</p> <p>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함(제5호)</p> <p>④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함(제7호)</p>
21	동일스위티	22.03.08	추락사	<p><u>시공사 및 시공사 대표이사</u></p> <p>① 피고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함에 있어 산안법 제36조와 그 위험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이 규정하는 방법과 절차·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함(제3호)</p> <p><u>수급업체 및 수급업체 대표이사</u></p> <p>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함(제3호)</p> <p>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함(제7호)</p>
22	정안철강 (철강 가공품 제조회사)	22.09.15	철판에 허벅지 베여 사망	<p><u>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의무위반 (법 제4조 제1항 제1호)</u></p> <p>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아니함(영 제4조 제3호)</p> <p>②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지 아니함(영 제4조 제5호)</p> <p><u>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의무 위반 (법 제4조 제1항 제4호)</u></p> <p>③ 안전·보건관리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반</p>

				<p>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아니함(영 제5조 제2항 제1, 2호)</p> <p><u>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의무위반 (법 제4조 제1항 제1호)</u></p> <p>① 관리감독자가 산안법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에게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제4조 제5호 가, 나목)</p> <p><u>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 위반 (법 제4조 제1항 제2호)</u></p> <p><u>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무 위반 (법 제4조 제1항 제4호)</u></p> <p>① 안전·보건관리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아니함(영 제5조 제2항 제1, 2호)</p>
23	SPC 계열사 에스피엘(주)	22.10.15	식품배합기 끼임 질식사망	<p>①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지 아니함(제5호)</p> <p>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함(제7호)</p> <p>③ 업무를 도급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도급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함(제9호)</p>
24	대일개발	22.03.29	폭발 사망	<p><u>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의무위반 (법 제4조 제1항 제1호)</u></p> <p>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함(영 제4조 제3호)</p> <p>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함(영 제4조 제5호)</p> <p>③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함(영 제4조 제7호)</p> <p><u>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무 위반 (법 제4조 제1항 제4호)</u></p>
25	지디종합건설	22.07.04	끼임 사망	<p>①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지 아니함(제5호)</p> <p>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함(제7호)</p> <p>③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도급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함(제9호)</p>

위 사례들에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실제로 적용된 의무 유형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1호 위반 - 2, 8, 9, 10, 11, 20⁷⁾ (6회)
 제2호 위반 - 12, 13, 19 (3회)
 제3호 위반 - 1, 2, 5, 6, 7, 8, 11, 12, 13, 14, 16, 17, 18, 19, 20, 21(2), 22, 25(18회)
 제4호 위반 - 8, 9 18 (3회)
 제5호 위반 - 1, 2, 3, 4, 5, 6, 7, 8, 9, 10, 11, 15, 18, 20, 22, 23, 24, 25(18회)
 제6호 위반 - 12 (1회)
 제7호 위반 - 3, 8, 10, 11, 15, 16, 20, 21, 24, 25(10회)
 제8호 위반 - 6, 7, 8, 9, 10, 11, 14 (7회)
 제9호 위반 - 2, 3, 4, 5, 13, 16, 24 (7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2호 - 23 (1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 2호 위반 - 7, 22, 23, 25 (4회)

첫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제5호)’ 하도록 정한 의무사항을 가장 많이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경영책임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 담당자들에게 맡겨놓고 이들이 안전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제대로 평가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조사를 해보면 공장장이나 현장소장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내지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등의 안전관리·감독의 부재 내지 소홀, 나아가 권한의 부재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임. 공소장 사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내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존재함.

이를 고려할 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이행을 실질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둘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징에 따른 유해·위험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9가지 의무사항 중 중심을 이루는 절차임. 유해·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과 고용노동부고시인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7) 공소장 순번을 기재한 것임.

지침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절차임. 그럼에도 공소장에서 유해.위험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의무에 대한 위반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중 두 번째로 위반이 많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그동안 기업들에서는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및 그에 따른 개선 절차를 매우 형식적으로 처리해왔음을 알 수 있음.

셋째, 세 번째로 위반 비율이 높은 의무는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인데, 이는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를 재해 예방에 참여해야 할 주체로 보지 않고, 지시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조직 문화에 기인한 측면이 강함.

넷째, 25건의 공소장 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로부터 반기가 경과한 후인 2022. 7 이후에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 이외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의무 규정이 적용됨. 그 이유는 점검 의무의 경우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에 기인함.

II.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판결문 분석

1. 판결 선고 비교

	1호 선고	2호 선고	3호 선고	4호 선고
선고일	2023. 4. 6.	2023. 4. 26.	2023. 6. 23.	2023. 8. 25.
법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창원지법 마산지원	인천지법	창원지법 마산지원
사망 유형	요양병원 증축공사 추락	한국제강 방열판 낙하 협착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전도 충격 사망	굴착기와 후면 담장 사이 협착 사망
원청	온유파트너스	한국제강(주)	시너지건설	만덕건설(주)
하청	아이코닉에이씨	강백산업	원진이엔지	(주)대득건설
유무죄 다툼 여부	공소사실 인정	공소사실 인정	공소사실 인정	공소사실 다툼 - 의무 중 제1호와 제4호 - 인과관계 부인 - 고의 부인
검사 구형	원청 대표이사: 징역 2년 (중처법) 원청 현장소장: 징역 8월 (산안법 및 업과사) 원청 안전관리자: 업과사: 벌금 500만원	원청 대표이사 : 징역 2년 (중처법, 산안법, 업과사) 원청업체 : 1억 5천만원 (중처법, 산안법)	원청 대표이사: 징역 2년 (중처법) 원청 현장소장: 원청업체:	원청 대표이사: 징역 2년

	원청업체 : 벌금 1억 6천만 (중처법, 산안법)			
	하청 현장소장 : 징역 1년 (산안법, 업과사) 하청업체 : 벌금 1천만원 (산안법)	하청 대표(개인사업주 & 안보건관리책임자): 징역 1년 (산안법 & 업과사)	하청 실대표자: 하청업체:	
법원 선고	원청 대표이사: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원청 현장소장: 징역 8월, 집유 2년, 원청 안전관리자: 벌금 500만원, 원청업체: 벌금 3천만원	원청 대표이사 : 징역 1년, 법정구속 원청업체: 벌금 1억원	원청 대표이사: 징역 1년, 집유 3년, 원청 현장소장: 징역 6월, 집유 2년, 산업안전사고수강 40시간, 원청업체: 벌금 5천만원	원청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원청 이사 & 현장소장: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원청업체: 벌금 5천만원
	하청 현장소장: 징역 8월, 집유 2년 하청업체: 벌금 1천만원	하청 대표(개인사업주) : 징역 6개월 집유 2년, 사회봉사 40시간	하청 실대표자: 징역 6월, 집유 2년, 산업안전사고수강 40시간 하청업체 : 벌금 7백만원	하청 현장소장: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굴착기 작업자: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하청업체: 벌금 1천만원
항소심	항소 포기 확정	쌍방 항소 항소 기각		

	5호 선고	6호 선고	7호 선고	8호 선고
선고일	2023. 10. 6.	2023. 10. 12.	2023. 10. 18.	2023. 11. 3.
법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서울북부지법	제주지법	창원지법 마산지원
사망 유형	철근 낙하 머리 충격	추락사	굴뚝에 깔려 사망	직업성 질병
원청	건릉건설(주)	국제정보산업	제동종합건설	두성산업
하청	(주)큰골토건			
유무죄 다툼 여부	공소사실 인정	공소사실 인정	공소사실 인정	공소사실 다툼 위헌제청신청
검사 구형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징역 1년 아파트 관리소장: 징역 1년 업체: 벌금 1억 5천만원	원청 대표이사: 징역 2년 원청 현장소장: 징역 1년 6개월	원청(두성산업) 대표이사: 징역 1년 두성산업: 벌금 5백만원

			<p>원청 현장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 공사 책임감리자: 금고 1년</p> <p>원청업체: 벌금 1억 5천만원</p>	<p>원청(대흥알엔티): 대표이사: 징역 1년(산안법, 화관법)</p> <p>대흥알엔티: 벌금 2천만원</p> <p>유성케미칼(세척납품업체) 대표이사 징역 3년</p> <p>유성케미칼: 벌금 3천만원</p>
법원 선고	<p>원청 대표이사: 징역 1년 6월, 집유 3년(중처법)</p> <p>원청 현장소장: 징역 1년, 집유 2년(산안법등)</p> <p>원청업체(건릉건설): 벌금 2천만원</p>	<p>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징역 8개월, 집유 2년(중처법)</p> <p>아파트 관리소장: 징역 8개월, 집유 2년(업과사 등)</p> <p>업체: 벌금 3천만원</p>	<p>원청 대표이사: 징역 1년2개월, 집유 3년(중처법)</p> <p>원청 현장소장: 금고 1년, 집유 3년(업과사 등),</p> <p>원청 현장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 공사 책임감리자: 금고 8개월, 집유 2년</p> <p>원청업체: 벌금 8천만원</p>	<p>원청(두성산업) 대표이사: 징역 1년, 집유 3년(중처법), 사회봉사 320시간</p> <p>원청(대흥알엔티): 대표이사: 징역 10개월, 집유 2년(산안법, 화관법)</p> <p>두성산업: 벌금 2천만원</p> <p>대흥알엔티: 1천만원</p> <p>유성케미칼(세척제납품업체) 대표이사 징역 2년</p> <p>유성케미칼: 벌금 3천만원</p> <p>위헌제청신청 기각</p>
	<p>하청 대표(실경영자): 징역 1년, 집유 2년(산안법등)</p> <p>하청 현장소장: 징역 1년, 집유 2년(산안법등)</p> <p>하청업체: 벌금 1,500만원</p>			

2. 판결에 대한 평가

첫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수사 및 처벌의 중심 대상이 원청의 대표이사로 이전되었음.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담당자 중심으로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음.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중대재해에 대한 종전의 양형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임. 8건의 선고 중 1건을 제외하면 모두 집행유예이고, 원청 대표이사에게 선고되는 형량도 1년 ~ 1년 6개월로서 법정 최저형인 1년에 근접함. 이러한 형량은 종전 산안법 체계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선고된 형량 수준과 크게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2021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산안법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에 대한 기본 양형을 징역 1년 ~ 2년 6개월로 설정한 것과 비교해보아도 문제가 있어 보임.

셋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이 50억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여전히 원청업체에 대한 선고형 또한 2천만원~1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음. 기업은 안전투자 비용과 사후 수습 비용을 형량하여 안전을 우선할 것인지 생산을 우선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법인에 대한 처벌 수준 또한 법의 위하력(억제효과)를 보여주기에 턱없이 부족함.

넷째,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 8건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대한 구형을 보면 원청 경영책임자에 대해 8건 중 6건은 모두 징역 2년, 2건은 징역 1년에 그치고 있음. 이는 2022년 대검찰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으로 기본형을 2년 6개월에서 4년으로 설정한 바 있는데 이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것임을 알 수 있음. 법인에 대한 벌금형 구형 또한 원청업체에 대해 1억 5천만원 전후로 유사한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을 50억원으로 정하고 있는 점과 원청업체의 매출액을 고려해보면 과연 경제적 제재 효과를 고려한 구형인지 의문임. 더욱 문제인 것인 사안의 경중이나 죄질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임에도 구형은 천편일률적이라는 것임. 검찰의 낮은 구형은 결국 법원의 낮은 양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자신이 정한 양형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형의 문제점은 심각해보임.

다섯째, 8호 선고 사건(직업성 질병)에서 피고인들이 제기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와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서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기각한 것은 예상된 것이긴 하나 판결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단순히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 또는 현장관리자의 위법행위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 내의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위험관리시스템 부재 등 제도적·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하에, 이러한 제도적·구조적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개선·시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들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이러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고 판시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을 기업 내의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위험관리시스템 부재 등 제도적·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하에, 그 구조적 원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여 중대재해 발생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Ⅲ.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불기소 사례

1.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2022. 6. 27. 창원지검) - 대흥알엔티

가. 사고개요

-유해물질(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여 13명 근로자들에게 '독성간염' 증상 초래

나. 불기소 이유

-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위험성평가 후 집진장치 오류 일부 개선 조치, 안전진단시 작업자 설문조사), ② 종사자 의견 청취(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단계적 개선 계획), ③ 재해예방 예산 편성(국소배기장치 개선 등 9.7억 원 배정)

다. 주요 사항

- 동일한 사안에서 두성산업(국소배기장치 미설치, 16명 감염)은 기소, 대흥알엔티(국소배기장치 설치, 13명 감염)는 불기소하였음

2. 정유업체(2023. 8. 11. 울산지검) - 에쓰오일

가. 사고 개요

- 2023. 3. 19.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장 지하 매설 탱크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협력업체 종사자 2명이 전신 화상을 입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나. 피고인

- 원청 정유생산본부장, 생산운영본부장 등 13명

다. 법상 위반 의무

- 사전 위험성평가 매뉴얼대로 미실시, 화학물질 누출 우려가 있음에도 덮개발 미설치

라. 주요 사항

- 원청 대표이사는 대주주인 외국기업이 선임한 대표이사 후세인 에이 알카타니는 외국인(사우디아라비아)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최고 안전책임자(CSO)에게 전부 위임하고, 실질적·최종적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중처법상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 원청 최고 안전책임자(CSO)는 안전에 관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해 중처법 위반 혐의 없으므로 불기소

3. 서비스 유지보수업체(2023. 8. 17. 서울 동부지검) - LG전자 하이엠솔루션

가. 사고 개요

- 2022. 4. 12. 서울 송파구 상가 5층 외벽에서 근로자가 에어컨 실외기 점검을 위해 창문을 분해하고 넘어가 실외기 상판을 딛고 가던 중 12m 아래로 추락사

나. 불기소 이유

- 고소작업대 예약일보다 하루 앞당겨 수리작업 개시하여 고소작업대 없이 작업하였으므로 산안법상 추락방지조치 의무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노동조합 주장에 따르면, 수리기사들의 평소 업무 스케줄이 지나치게 빡빡한 탓에 부품을 구하고 사다리차 배차를 기다리는 등 2~3일씩 작업 지연을 허용할 여유가 없고, 고객 항의도 있기 때문에 온 김에 점검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였음(사다리차 배차가 될 때까지 해당 건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생기고, 수리기사가 위험한 작업환경을 이유로 수리를 거절한 경우에도 고객 민원이 기사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음)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없음(2단계 인과관계 단절)

다. 주요 사항

- 2022. 9. 13. 제주시 이도2동 LG베스트샵 제주이도점에서 에어컨 실외기 수리 중 28세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 재발하여 부산고용노동청 수사 진행

[토론 ①]

50억 미만 건설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의 문제점

하동현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남건설지부장

건설업의 특성과 현황

- 건설산업은 주문(발주)에 의해 시공에 착수하는 수주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발주(시행) - 원도급(시공) - 하도급 - 재하도급(불법적으로 만연해 있음)으로 이어지는 중층적 하도급 구조가 형성돼 있음.
-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처럼 매출이 증가하면 연동해서 이윤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계약과 최저가낙찰제 등에 의해서 매출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용을 절감해야만 책정한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원도급사는 입찰과정에서 적정가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전문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한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계약과정에서의 갑을간의 위치로 인해 원청이 입찰을 수 차례 유찰시켜서 최저가낙찰을 관철시켜도 대항할 방법이 없음.
- 도급구조의 하부로 내려갈수록 한정된 자원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 등에 대한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 낮은 입찰금액이 공사 낙찰의 절대적인 요소로 작동하는 조건에서 안전 관련 비용을 불필요한 지출로 인식하고 안전관리비를 아예 미계상하거나 과소 계상함.
- 생산성을 높이고 관리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하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체는 불법적으로 재하도급을 실행하면서 물량도급의 형태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관리비용을 절감하며 안전관리비조차도 비용이 아닌 자신들이 가져가야 할 이윤의 일부로 인식해서 횡령까지 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 건설현장은 육체노동을 경시하는 사회풍토와 위험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내국인 신규인력

의 유입이 사실상 중단됐음. 건설자본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신분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맘 편히 착취할 수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비율을 높여서 인건비의 비중을 낮추고 있는 상황임.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재하도급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대다수 공정에서 다양한 방법의 불법적인 재하도급이 횡행하고 있음.

공정 형태	불법적인 재하도급 내용
철근	헤베당 얼마 철근이사(불법)가 톤당 얼마에 재하도급을 받아서 무자격 인력사무실(용역업체)에서 불법과건 받는 경우가 상당수
시스템	자재임대업체에 부속되는 방식으로 시공팀이 루베당 얼마에 물량 도급,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 상당수
해체정리	루베당 얼마, 해체정리의 경우 무자격 인력사무실(용역업체)에서 불법과건하는 경우가 상당수
타설	타설이사(불법)가 루베당 얼마에 재하도급을 받아서 펌프카에 부속되는 방식으로 타설 인력 수급

- 직접시공대상인 현장에도 건설사가 공사만 낙찰 받고 실제로는 무자격 건설업자(시다오께, 오야지 등)에게 불법적으로 4데마 전체를 일괄 재하도급을 해서 시공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이런 현장에서 안전은 고사하고 노동자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이행되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안전관리책임자도 없는 50억 미만 공사현장에서 시급한 중대재해의 위험성이 확인돼서 고용노동부에 위험상황신고를 해봤자 고용노동부는 인력부족을 핑계로 사실상 나와보는 경우가 거의 없음.

- 2021년 7월부터 실시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일제 점검 결과 전국 건설현장 1만4567곳 중 68.1%인 9,923곳에서 3대 안전조치 위반 사례가 적발됐음.

- 공사 금액별로 보면 3억~10억원 건설현장의 위반 비율이 42.7%로 가장 높았고 10억원 이상은 31.6%, 3억원 미만은 25.6% 등 순으로 나타남.

- 90.8%에 달하는 5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면제 등 각종 법적 책임과 의무에서 자유로운 상황에서 또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면제해주는 것은 산재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중소기업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포기하는 것임.

[토론 ②]

50인 미만 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정현철 |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 지회장

1.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배경

- 세월호 참사와 반복되는 비극적인 노동자 사망사고
-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 제도적 뒷받침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위험의 외주화 방지)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2. 안전보건 패러다임의 변화

- 기업경영에 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하듯이, 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하듯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해야.
- 기업이 'ESG 경영' 을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듯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기업활동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함.

<산업안전보건 패러다임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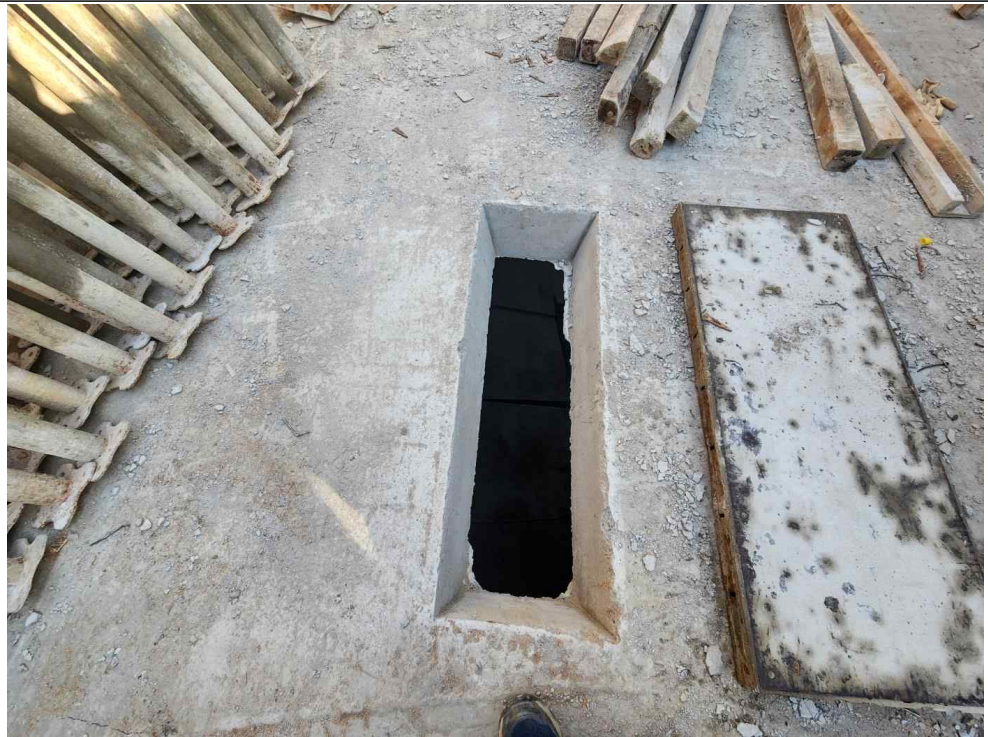
- 중대재해처벌법은 변화를 촉진하고 안착하는 역할.

3.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 주는 시그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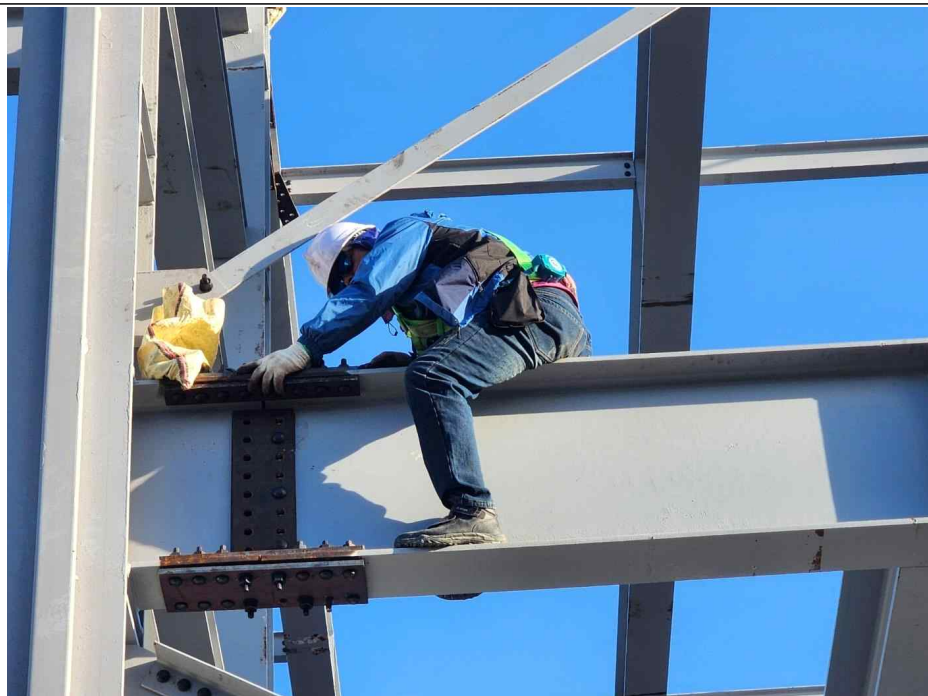
-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

4. 이것은 준비(비용)의 문제일까. 태도(마인드)의 문제일까.

2023.10.17.
자재인양개구부
관리부적합



2023.11.10.
H빔거치작업자
안전고리미체결



2023.06.02.
자재적재소 안전난
간대 또는 안전체
인 미설치



2023.07.07.
호이스트 크레인
후크 해지 기능 해
제 후 사용



2023.07.11.
설비 구동부 안전
방호망 미설치



2023.08.30.
슬링벨트 마모 및
손상 부품 사용중



압연기 커플링
샤프트 노출



지게차 후진경보음,
경광등 미 작동 상
태로 운행



계단 hand rail 및
1층 slab 추락방호
시설 미설치



3층 slab 개구부
덮개 미설치



5. “준비가 안 되어 있기에 더욱 시행해야 한다”

- 법 적용을 2년 유예한다고 과연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준비가 될지 의문이다. “준비가 안 됐다, 역량이 안 된다” 는 식의 경영계 주장은 2년 뒤에도 아니 10년 뒤에도 똑같은 것이다. 준비가 안 되었기에 역량이 안되기 때문에 더욱 시행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노사가 조금이나마 산업재해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래야 죽음의 행진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죽음의 일터로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국민의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개정안 발의에 대한 한 국노총 입장. 9월7일)

[토론 ③]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이명구 |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1. 논쟁

□ 소규모 사업장의 적용 유예 여부

- 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공사)

□ 근로자와 사용자 이해관계자의 견해 차이

- 근로자 : 법은 모두 평등,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 보호
- 사용자 : 역량 미흡에 따라 추가 유예 필요

□ 노·사·정 공통 견해

-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노력의 중요성
 - 경영책임자의 의지가 산재예방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
 -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더욱 그러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의 관심이 매우 높아짐

2. 법령

□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50명 미만 사업장 의무적용 여부 검토

□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방침 설정

- 목표와 방침 설정은 산재예방의 출발,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
- 가훈(家訓), 교훈(校訓)과 같이 사훈(社訓)을 두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

2.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을 둘 것

- 50명 미만 사업장은 해당없음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시공능력순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에 해당

3. 위험성평가 절차·실시·확인(반기에 1회 이상)

- 문서행위 복잡한 절차 탈피
- 체크리스트법을 이용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도 인정
- 사업장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위험성평가 기법 지속 전파 노력 필요

4.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 산재예방활동을 위한 예산 편성은 기본적 준수사항
- 금액의 하한계액을 정하고 있지 않음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안전보건관리책임자⁸⁾, 관리감독자⁹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¹⁰)의 권한과 예산 제공, 이들의 업무 수행 평가(반기에 1회 이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및 직무에 관한 규정은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임
- 관리감독자는 50명 미만인 경우라도 사업주가 직접 생산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이면 의무 선임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업종은 50명 미만인 경우 선임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관리감독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는 근무 평가 기준 중 하나의 항목으로 정할 수 있고, 관리감독자 등의 평가는 사업증진과도 연관된 항목임
- 50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오히려 권장하여야 할 항목임

6. 산안법에서 정한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선임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¹¹, 산업보건의 등의 선임의무¹²는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임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제외하면 50명 미만 사업장은 해당없음
-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는 때에 의무 선임 대상 사업장의 경우 선임 안내를 하는 등 행정적 안내·홍보가 필요함

7.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반기별 이행 확인(산업안전보건위원회¹³, 도급사업의 협의체¹⁴ 등으로 갈음 가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급인과 수급인의 협의체, 노사협의체 등을 운영하여 안전보건 관련

8)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그 이외에는 상시근로자가 사업종류별 50명, 100명 또는 300명 이상인 사업(산안법 시행령 [별표 2])

9)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며, 산업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산안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1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 건설업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해당공사의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그 이외에는 상시근로자가 사업종류별 50명 또는 100명 이상인 사업(산안법 시행령 제52조)

1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제조업 등의 사업장(산안법 시행령 제24조)

12)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500만원(산안법 제175조제5항제1호)

1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사업 :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그 이외에는 상시근로자가 사업종류별 50명, 100명 또는 300명 이상인 사업(산안법 시행령 [별표 9])

14) 도급사업의 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 : 건설업(노사협의체)인 경우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그 이외의 업종은 규모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산안법 제64조, 제75조, 시행령 제63조, 시행규칙 제79조)

- 사항을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 종사자의 의견 청취를 한 것으로 같음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50명 미만 사업장은 해당없고, 도급사업의 경우 건설업은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없으나 그 이외 업종은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운영하여야 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 노사협의회에서는 안전·보건, 작업환경 개선, 근로자의 건강증진 등의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에서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협의한 경우에도 종사자의 의견 청취를 한 것으로 같음**하도록 시행령을 보완할 필요 있음
- 30명 이상은 어떠한 형태든 근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이며, 다만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현행 다른 법령상 규정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
- 하지만,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반드시 안전·보건 사항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사업증진을 목적으로 반기에 1회 이상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회합하여 상호 건의사항 청취 등의 과정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그 형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별로 자유롭게 이행하면 될 것임

8. 매뉴얼(작업중지 등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을 마련하고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에 1회 이상 점검

- 이는 서류 상의 문제이므로 50명 미만 사업장은 이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이행여부 확인은 작업중지를 하여야 할 정도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러한 위험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없음
- 매뉴얼을 갖추는 것은 비상훈련과 연관된 것으로 유효한 행위이나 이의 불이행이 중대재해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산안법 제52조에도 이미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규정임
-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을 위해서는 매뉴얼을 갖추는 등의 규정이 필요한 하나 소규모 사업장의 문서행위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문구 개정이 요구됨

현행 조문	개정(안)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	8. ----- ----- ----- -----

<p>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단서조항 추가)</p> <p>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p> <p>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 조치</p> <p>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p>	<p>----- . 다만,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보건교육의 교육내용에 매 반기별 포함한 때에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반기에 1회 이상 확인한 것으로 한다.</p> <p>가. (좌동)</p> <p>나. (좌동)</p> <p>다. (좌동)</p>
---	---

9. 도급 사업에서 수급인의 산재예방 능력 평가 기준·절차 마련,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비용, 공사기간(건설업)·건조기간(조선업) 등의 기준 마련

- 이 규정은 도급 사업에서 산안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등 도급인의 의무이행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
- 대규모 사업인 경우 또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요한 조문임에는 틀림이 없음
- **나목**의 안전·보건 관련 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과 같이 유사한 기준을 정부에서 제시하여야지 개별 사업주에게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고시 등에서 정하지 않은 건설업 이외의 업종에서 설혹 비합리적인 안전·보건 관련 비용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조문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목**의 공사기간 및 건조기간에 관한 규정도 정부 차원에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며 개별 사업주별로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안전·보건 비용 기준과 유사하게 **실효성이 낮으므로 삭제**하고, 제9호에서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보건활동 평가 관련 **가목만 남기고 나목 및 다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규정은 서류 및 인력 상의 문제이므로 50명 미만 사업장은 이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산안법 제61조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입찰 참가업체(도급을 받는 자)의 산재예방 능력과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자별로 그 실적 데이터를 관리하고 제공하여야 할 것임
-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의 사업주가 도급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나,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도 대부분 수많은 수급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제시함

현행 조문	개정(안)
<p>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u>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단서조항 추가)</u></p> <p>가. <u>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삭제)</u></p> <p>나. <u>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삭제)</u></p> <p>다. <u>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삭제)</u></p>	<p>9. ----- ----- ---- <u>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다만,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 준수 약정서를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u></p>

□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50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
-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안전·보건 분야 이외에도 사업주의 몫이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위탁하여 확인할 수도 있음(전문가를 직접 고용할 필요는 없음)

2. 제1호 결과 이행되지 않은 때에 인력 또는 예산 추가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 미이행 사유가 인력 또는 예산의 부족이라면 당연히 사업주가 이를 지원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
- 50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예외를 둘 수 없는 사안임

3.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 안전·보건 법령상의 의무이며(산안법 상 특별교육 등),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규정임

4. 제3호 결과 이행되지 않은 때에 이행 지시 및 예산 확보 등의 조치

- 안전보건교육 미이수가 예산의 부족이라면 당연히 사업주가 지원하여야 하며 이는 50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예외를 둘 수 없는 사안임

4.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조건

□ 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 제4조 또는 제5조를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

□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령 취지

○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또는 경영책임자)의 의지 및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사업주(또는 경영책임자)가 준수하여야 할 핵심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처벌 목적이 아니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을 정하고 이 내용만 준수하더라도 중대 재해를 예방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됨

- 실제로 법령 시행 이후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관한 인식은 크게 변화되었음을 다양한 연구 결과 등에서 확인되고 있음

5. 심리절차에 관한 규정

□ 법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음

○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함

□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및 살인에 관한 법률」 제8조(배심원)

(1)(a)조직이 개인에게 관련 주의의무의 책임이 있는지가 입증되고, (b)그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배심원들에게 달려 있다.

(2)배심원단은 해당 기관이 위반 혐의와 관련된 보건 및 안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는지를 고려하고, 그러하다면 (a)그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지, (b)사망의 위험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3)배심원은 또한 (a)(2)항에서 언급한 잘못을 부추기거나 그러한 잘못을 허용하는 기업의 태도, 정책, 시스템 또는 관행이 있다는 증거의 정도를 고려하고, (b)위반 혐의와 관련된 모든 보건 및 안전 지침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배심원들이 그들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문제들을 고려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5) 이 조에서 “보건 및 안전 지침“이란 보건 및 안전 문제와 관련된 모든 코드, 지침, 매뉴얼 또는

유사한 간행물을 의미하며, 보건 및 안전 관련 법률의 집행을 책임지는 당국에 의해 작성 또는 발행(법령 규정 또는 기타 방식으로)됩니다.(a)조직이 개인에게 관련 주의의무의 책임이 있는지 가 입증되고, (b)그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배심원들에게 달려 있다.

8 Factors for jury

- (1) This section applies where—
 - (a) it is established that an organisation owed a relevant duty of care to a person, and
 - (b) it falls to the jury to decide whether there was a gross breach of that duty.
- (2) The jury must consider whether the evidence shows that the organisation failed to comply with any health and safety legislation that relates to the alleged breach, and if so—
 - (a) how serious that failure was;
 - (b) how much of a risk of death it posed.
- (3) The jury may also—
 - (a) consider the extent to which the evidence shows that there were attitudes, policies, systems or accepted practices within the organisation that were likely to have encouraged any such failure as is mentioned in subsection (2), or to have produced tolerance of it;
 - (b) have regard to any health and safety guidance that relates to the alleged breach.
- (4) This section does not prevent the jury from having regard to any other matters they consider relevant.
- (5) In this section “health and safety guidance” means any code, guidance, manual or similar publication that is concerned with health and safety matters and is made or issued (under a statutory provision or otherwise) by an authority responsible for the enforcement of any health and safety legislation.

□ 위반행위 기소 및 판정의 엄격 적용

- 단순히 발생된 결과(중대재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발생된 과정을 충분히 고려한 기소·판결이 요구됨
 - 기업의 관행(잘못된 위반행위), 사업주의 경영 자세(피해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 작업환경 또는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중대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임(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의 의무에서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한(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이라는 단서가 있음
 - 안전조치를 완벽히 이행하기에는 작업조건, 작업형태, 막대한 자금소요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야말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음
 - 사업주(또는 경영책임자)가 평상시 사고예방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를 고려하고 사고발생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법 적용이 필요함
 - 그러므로 50명 미만 사업장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제1호 및 제4호의 위반보다는 제2호(재발방지대책 수립의무)* 및 제3호(행정기관의 명령이행의무)** 위반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 중대재해 발생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안일한 대처

6. 결론 및 건의사항

- 50명 미만 사업장뿐만 아니라 문서 위주의 비효율적 예방업무 해소 목적을 위하여 시행령 제4조 제8호 및 제9호는 제안한 바와 같이 개정할 것을 권함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준수사항이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도 있고, 그 이외의 규정은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50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예외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고, 50명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기간을 두었기에 추가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법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음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은 법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법 제4조 또는 제5조를 준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을 홍보하고 이를 인식하여야 함
- 사업증진과 안전규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업증진을 위한 활동 속에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함. 실제로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사업장의 존폐 위기에 이른 사례는 많이 있음.
-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 운영을 위해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정책은 매우 중요하며,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산재예방을 위한 핵심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교육을 이수할 기회가 없으므로 그러한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필요 있음

[토론 ④]

중소기업 산재예방 실태밀 투자 확대방안

이명로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1. 실태

- 50인 미만 사업장 80.0%가 중처법 시행과 관련 ‘아직 준비 못했다’, 85.9%가 ‘유예기간 연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중기중앙회, '23.8.)
 - 준비 못한 이유 1위는 ‘전문인력 부족’(35.4%)을 응답
- 유예 연장되지 않을 경우 ‘대책 없다’(57.8%), ‘고용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 고려’(18.7%), ‘사업 축소 및 폐업 고려’(16.5%)
 - ⇒ 이대로 중처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 직면 예상

2. 산재사망에 대한 중소기업의 태도

- 숙련근로자의 사망은 극구 피하고 싶은 일
 -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력 손실로 인력난 심화
 - 사망사고시 막대한 보상비와 강한 작업중지로 경영에 큰 타격
- 죽음으로 내몬다는 표현은 과한 측면
 - 판례에서도 사업주 책임은 미필적 고의, 즉 위험작업 인지하고도 지시하거나 묵인·방치한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

3. 중소기업의 산재예방투자 확대 어려움(묵인·방치의 배경)

△ 중처법의 요구사항은 예산·인력을 대폭 투입하여 예방체계를 구축하라는 것 → 중소기업에게 기대하기 곤란한 것이 현실

가. 30~40년동안 사망사고 없이 사업 수행

- 통계상 중소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날 확률은 0.01~0.3%(산안공단, '21), 규모가 작을수록 사망확률은 감소

나. 열악한 경영·자금 사정

- 낮은 영업이익률(대기업 7%의 절반수준인 3.5%에 불과, '21) → 예방투

자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것

- 낮은 도급단가, 규모의 영세성에 기인

다. 타이트하고 촉박한 납기·공기 설정

- 대기업·공공부문 등 도급사업주(원청)가 도급계약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작업하기 어려울 정도의 납기·공기 설정

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도적·적극적인 참여나 관심 부족

- 사망사고의 상당부분이 근로자의 작업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행 등을 이유로 안전수칙 준수에 소극적인 경우 상당수

* 고용부 조사결과 사망사고원인은 근로자의 작업행동, 이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와 관련이 깊은 작업관리상의 원인(63.57%) > 기술적 원인(15.55%) > 교육적 원인(6.14%) > 분류불능(14.73%)순 [고용노동부 '2020년도 산업재해 현황분석']

※ 매경과 중앙회 공동으로 사업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사업주의 70%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의 불안정한 행동이 사망사고 핵심원인이라 답변

- 임금확보를 우선시해 안전수칙 준수에 비협조하는 사례

- 노조의 단체교섭의제 순위중 산업안전은 6위, 중점 의제 1순위로 ‘임금’을 답한 곳이 37.5%<한국노동연구원, 2023.5, 유노조 사업장 200곳 대상 설문조사>

- 산안법상 보장된 위험작업중지(거부)권 행사에 미온적

4. 형사처벌 강화의 부작용이 순기능 초과

- 경영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 형사처벌 강화한다고 예방투자 늘리기 쉽지 않음
- 중소기업은 사업주 역할이 절대적이어서 형사처벌 강화로 사업주 구속 시 **폐업 가능성** 및 이로 인한 **근로자 일자리 상실 가능성** 큼

5. 대책

- 가. 유예기간중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예방노력에 더해 **정부의 대폭 지원** 필요

※ 중처법 제16조에 예산지원 근거 명시됨

1) 그간의 중소기업의 예방 노력

- 중기중앙회 주관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2회에 걸쳐 중

대재해처벌법 관련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약 5,000개사 참여) 및 중처법 안내서 발간·배포

- 산업안전상생재단(현대차그룹 6개사 출연 비영리재단)과 MOU체결하여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실시, 중대재해예방 매뉴얼 개발 진행중

2) 정부 산재예방지원 현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투자 혁신사업 등 산재 예방 지원사업 신설하며 예산규모를 2020년 4,198억원에서 2023년 1조 1,987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
-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인이상 50인미만 중소기업 83만개소 대비 1.9% 수준인 1만 6천개소만 수혜
 - ※ `22년말현재 사업주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8.2조원 중 기업의 산재예방지원은 약 1조원(약 12%)에 불과
-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의 핵심 판단 기준인 위험성평가는 올해 5월 고시 개정되어 현장에서는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

3) 유예기간 중 정부지원 필요사항

- 산재예방 전문인력 활용·채용 인건비 지원
 - 중소기업 자체 안전관리 인력 채용 지원
 - 전문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중소기업 취업 기피, 공급인원 부족, 인건비 부담 등으로 채용 곤란
 - 공동 안전관리자 활용 지원
 - 사업주 단체(업종별 조합, 지역산업단지 등)가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 담당자를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등 지원
- ⇒ 정부지원 컨설팅을 받더라도 후속조치를 위해서는 안전전문 인력 채용·활용 지원이 필수적
- 중처법 대응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 확대
- 전산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위험작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보급

○ 노후화된 위험 기계·시설·장비 교체 지원

○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도 납품기한/공기를 준수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시설·장비 개발· 보급

나.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사정을 감안한 면책요건을 중처법에 명시

○ 산재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명시, 대기업과 차별화 필요

다. 공공부문 및 대기업(도급사업주)이 도급시 안전수칙 준수 가능한 납기·공기 설정

라.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 위험성평가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으로 사업장 맞춤형 안전 수칙 작성

○ 작성된 안전수칙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 및 철저히 준수

※ 근로자의 생명·건강보호의 일차적 책임은 근로자 본인, 사업주에게 모든 책임 전가 불합리, 사업주에게 근로자 안전배려의무 있듯이 근로자에게는 성실의무 有

